

金融과 産業間 關係의 發展方向

1996. 5. 13

李 基 榮
崔 長 鳳

韓國租稅研究院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 금융과 산업간 관계의 발전방향
- 일 시 : 1996년 5월 13일(월) 14:00~17:00
- 장 소 : 제일은행 본점 4층 대회의실
- 진행순서
 - 14:00~14:10 개회인사 (최 광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4:10~14:30 제1주제발표 : “업종전문화시책의 평가와 향후 금융지원정책의 방향”
 - 14:30~14:50 제2주제발표 : “금융개방에 따른 산업자본의 금융기관소유에 있어서의 정책방향”
 - 14:50~16:40 토 론
 - 16:40~17:00 종합토론 및 정리
- 사 회 자 : 김인기 (중앙대 교수)
- 발 표 자 : 이기영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제1주제)
최장봉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제2주제)
- 토 론 자 : 박시룡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양봉진 (한국경제신문 국제1부장)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
이경태 (산업연구원 부원장)
이영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이중효 (교보생명보험 사장)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장규진 (동원증권 사장)
전대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정운찬 (서울대 교수)
조성진 (한국외환은행 전무이사)

(가나다 順)

第 1 主題

業種專門化施策의 評價와 向後
金融支援政策의 方向

李 基 榮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本 論文의 內容은 發表者 個人의 見解이며 韓國租稅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와
는 無關함.

目 次

<要約>	9
1. 業種專門化 施策의 導入背景 및 經緯	11
2. 現行 業種專門化 施策의 主要 內容	14
가. 適用對象	14
나. 主力業種 및 主力企業의 選定	14
다. 業種專門化 誘導施策의 內容	15
3. 業種專門化 施策의 問題點	17
가. 業種專門化 論理의 妥當性	17
나. 業種專門化 誘導를 위한 政府의 役割	19
다. 政策目標의 優先順位와 政策手段의 適合性	20
라. 主力業體 選定의 問題點	21
4. 主力業體의 企業成果 分析	23
가. 財務構造 및 金融費用	23
나. 收益性 및 成長性	26
다. 綜合	27
5. 業種專門化 施策에 대한 評價	30
가. 個別施策에 대한 評價	30
나. 綜合的 評價	37
6. 結論：向後 金融支援政策의 方向	39
가. 偏重與信抑制制度의 必要性	39
나. 出資總額制限制度의 實效性 提高	41
다. 同一人 與信限度의 例外認定措置의 最小化	41
라. 海外證券 발행시 優待措置의 實效性	42
마. 綜合	42
參考文獻	43
<附表> 主力業體와 所屬大企業集團의 資産·資本比率 推移(1990~1994)	44

<要 約>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은 (i) 與信管理規制의 緩和, (ii) 海外金融의 圓滑化, (iii) 公正去來法상 出資總額制限 緩和, (iv) 銀行法상 同一人에 대한 與信限度 制限 緩和, (v)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업에 주력기업 우대 등의 정책수단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은 기본적으로 銀行與信 및 直接金融 등에 의해 주력기업의 資金調達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업종 전문화와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業種專門化施策은 業種專門化 論理의 妥當性, 業種專門化 誘導를 위한 政府의 役割, 政策目標의 優先順位와 政策手段의 適合性, 主力業體 選定의 問題點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은 資金供給의 擴大效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歪曲效果(偏重與信, 財務構造의 惡化, 經濟力集中)가 있거나, 다른 歪曲效果가 없는 경우에는 資金供給의 擴大效果가 미미한 것으로 評價된다. 主力企業에 대해서 與信限度管理 對象에서 除外하는 措置와 出資總額制限 緩和措置는 主力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을 원활하게 하는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으나 偏重與信緩和와 財務構造改善을 목적으로 하는 與信管理制度 및 經濟力集中緩和를 목적으로 하는 出資規制制度의 도입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한편 主力企業에 대한 銀行法상 同一人 與信限度 例外認定 및 해외증권 발행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치는 主力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을 擴大하는 데 있어서 큰 實效성이 없다.

향후 주력업종제도와 관련된 金融支援政策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偏重與信抑制制度의 實效性を 提高하는 것이 필요하다. 與信管理規制의 緩和를 위해서는 金利自由化·資本自由化를 통한 자금의 초과수요현상 해소, 偏重與信抑制를 위한 制度整備, 中小企業金融支援制度의 擴充 등 선결되

어야할 과제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與信限度管理를 통한 偏重與信抑制政策의 필요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主力業體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의 예외 인정은 여신한도관리의 實效性を 沮害하고, 主力業體의 財務構造를 악화하여 오히려 기업의 長期的인 競爭力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강하므로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出資總額制限制度의 實效性 提高가 요구된다. 현 시점에서 볼 때도 아직 30대 기업집단의 他會社出資, 財務構造, 所有集中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主力企業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로 볼 때 더욱 劣惡한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出資總額制限은 오히려 強化되어야 한다. 따라서 主力企業에 대한 出資總額制限制度상의 예외 인정도 재고되어야 한다.

셋째, 同一人 與信限度의 例外認定措置는 最小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主力業體에 대하여 은행법상 同一人 與信限度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는 지원의 實效성이 크지 않으며, 同一人 與信限度 規制는 金融自律化가 진전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金融監督事項이 될 것이므로 예외의 인정은 最小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業種專門化 施策의 導入背景 및 經緯

政府의 다양한 대재벌정책(<表 1>을 참조) 가운데 業種專門化施策만큼 도입여부를 놓고 論難이 많았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評價된다. 1989년 이후 景氣沈滯를 겪으면서 國際競爭力 危機論이 대두되었고, 競爭力 低下의 주요 원인으로서 재벌의 지나친 業種多邊化와 이에 따른 投資深化의 실패가 지적되어 왔다. 즉 경상수지 악화, 물가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製造業 空洞化와 製造業競爭力 弱化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제조업경쟁력 약화는 大企業集團의 集中된 所有와 非效率的인 經營資源의 運用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공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業種專門化를 강력히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1991년 6월 최초의 전문화유도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主力業體制度’가 시행되었다. 主力業體制度는 대기업들까지 不況으로 고전을 하고 여타의 財閥規制가 強化되던 1991년에 導入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妥當性에 대한 논의가 公論化되지는 못했지만 정부 안팎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진지하게 제기된 바 있다.

主力業體制度는 기본적으로 與信管理制度上的 規制緩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30대 재벌의 76개 계열사를 主力業體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與信管理制度上的 與信限度管理(바스켓관리), 自救努力義務 등의 규제를 면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5개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主力業體制度’는 ‘業種專門化施策’으로 바뀌고 정책의 내용과 수단도 점차 확대해 왔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業種專門化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① 開放化 및 國際化에 따라 국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大規

模企業集團이 非關聯多角化를 지양하고 「주력업종」에 한정된 財源을 집중 투자하여 業種의 專門化를 촉진한다. ② 先進國의 일류기업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주력기업」의 大型化와 一流企業化를 誘導한다. ③ 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와 기술융합 등 기술의 上昇效果가 극대화되도록 關聯多角化를 통해 産業競爭力을 제고한다. ④ 정부의 支援 및 유도시책을 통해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뒷받침함으로써 업종전문화를 촉진한다. 이상과 같은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業種專門化施策方向을 골자로 하여, 1993년 11월 상공자원부는 ‘大規模企業集團의 業種專門化施策 推進 方案’을 고시하였으며, 정부의 이같은 시책에 따라 총 32개 企業集團은 총 118개의 主力企業을 선정하였다(<表 2>를 참조). 이후에도 公正去來法 및 銀行法 施行令의 改正 등을 통해 業種專門化 施策의 手段을 多樣化하여 왔다.

<表 1> 政府의 對財閥政策 概要

	정책목적	정책주체	정책수단	구체적인 내용
업종전문화	전문화 유도	통상산업부	여신완화 규제완화	각기업이 작성한 업종전문화 계획에 의해 주력 및 관련업종 중심으로 전문화 유도
여신관리제도	편중여신 완화 재무구조 개선	재경원	여신관리	총자산기준 30대계열기업여신 한도 관리
출자규제	경제력 집중억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제정	대규모 기업집단의 타회사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25%로 제한
상호지보제한	상호자금 보증축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제정	30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상호지급보증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
기업공개촉진	경제력 집중 억제	재경원 증권감독원	공개기업에 대한 우대	자본시장육성법, 법인세법 등 각종법규를 통해 공개유도
상속증여세강화	기업소유의 가족 승계 방지	국세청	세제	공익법인 이용 변칙상속·증여 규제고액 자산가자산변동상황 관리체계 마련
무의결권주발행제한	소유분산 전문경영 체제확립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제정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한도를 현행 1/2에서 1/4까지 축소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화	재무구조개선 정보제공	재경원	外監法 제정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화, 외부감사의무화

<表 2> 32大 企業集團의 主力業種 및 118個 主力企業

연 번	그룹명	주력업종	주력기업
1	현 대	전기전자, 자동차, 에너지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차서비스, 현대정유*, 세일석유
2	삼 성	전기전자, 기계, 화학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항공 삼성종합화학*, 삼성석유화학
3	대 우	기계, 자동차, 유통운수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대우
4	L G	전기전자, 화학, 에너지	LG전자*, LG반도체*, LG화학*, LG석유화학, 호남정유, 세방석유
5	선 경	에너지, 화학, 유통운수	유공*, 흥국상사, SKI*, SKC*, 선경, 유공해운,
6	한 진	기계, 유통운수, 건설	한진중공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건설*, 한진종합건설
7	쌍 용	에너지, 비금속, 자동차	쌍용정유*, 범아석유, 쌍용양회*, 쌍용자동차*
8	기 아	자동차, 철강	기아자동차, 아세아자동차*, 기아기공* 기아특수강
9	한 화	에너지, 화학, 유통운수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 한화*, 한양유통
10	롯데	식품, 화학, 유통운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햄우유, 호남석유화학*, 롯데쇼핑*, 롯데역사
11	금 호	화학, 유통운수	금호*,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12	대 립	건설, 비금속	대림산업, 대림요업, 대림콩크리트*
13	두 산	식품, 건설	동양맥주*, 두산음료*, 두산종합식품 두산건설*, 두산개발
14	동 아	건설, 유통운수	동아건설*, 대한통운*
15	한 일	섬유의복, 건설	한일합섬*, 경남모직*, 한효건설*
16	효 성	화학, 전기전자	동양나일론*, 동양폴리에스테르* 효성바스프, 효성중공업*
17	동국제강	철강, 유통운수	동국제강*, 한국철강*, 연합철강*, 국제통운, 천양항운
18	삼 미	유통운수, 철강	삼미*, 삼미종합특수강
19	한 라	자동차, 기계	만도기계*, 한라공조*, 한라중공업
20	동 양	전기전자, 유통운수	동양SHL, 동양매직, 동양마트
21	코 오 롱	화학, 유통운수	코오롱*, 코오롱유화*, 코오롱상사*
22	진 로	식품, 유통운수	진로*, 진로종합식품*,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종합유통, 청주진로백화점
23	동 부	철강, 유통운수	동부제강*, 동부산업*, 동부고속*
24	고 합	화학, 유통운수	고려합섬*, 고려종합화학, 고려석유화학*, 고 합물산*
25	극 동	건설, 비금속	극동건설*, 국제종합건설*, 극동요업*
26	우 성	건설, 유통운수	우성건설*, 우성유통*
27	해 태	식품, 유통운수	해태음료, 해태산업, 해태상사*, 해태유통*
28	벽 산	비금속, 건설	벽산, 벽산건설*, 벽산개발*
29	미 원	식품, 화학	미원, 미원유화
30	삼 양	식품, 화학	선일포도당*, 삼양사*, 삼남석유화학*
31	한 보	철강, 건설	한보철강*, 한보
32	동국무역	섬유의복	동국무역, 동국방직, 동국합섬

註: * 표시는 여신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78개)임.
資料: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백서』, 1995.

2. 現行 業種專門化 施策의 主要 內容

가. 適用對象

資産總額基準 30대 企業集團과 30대 企業集團에는 속하지 않지만 與信管理 規制를 받고 있는 企業集團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참여여부는 企業集團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5년도부터 資産總額 및 金融機關 貸出金の 變動으로 인하여 30대 企業集團에 변경이 있을 경우 每年 適用對象이 변경된다.

나. 主力業種 및 主力企業의 選定

1) 主力業種

주력업종은 업종전문화시책상 15개 분류업종 중 농수산업, 금융보험업 및 기타서비스업을 제외한 12개 업종¹⁾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된다. 資産總額基準 上位 10대 企業集團은 3개 업종 이내, 11대 以下 企業集團은 2개 업종 이내에서 주력업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2) 主力企業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에서 專業率이 70% 이상이고 賣出額 比重이 10%

1) 食品제조업, 섬유·의복제조업, 목재·종이·가구제조업, 에너지자원산업, 化學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제조업, 기계장치제조업, 전기·전자 및 정보산업, 자동차 및 기타 수송기계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및 운수창고업.

이상인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3) 主力業種 및 主力企業의 變更·追加

主力業種 및 主力企業은 3년 이내에는 변경될 수 없으며, 企業集團의 資產總額 및 金融機關 貸出金の 變動으로 上位 10대 企業集團에 進入한 경우는 主力業種의 追加選定이 可能하다. 또한, 비주력업종에 속한 상당수의 계열기업을 완전 매각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1개 주력업종 또는 주력업종에 속한 2개 주력기업을 추가로 선정 가능하다.

다. 業種專門化 誘導施策의 內容

1) 與信管理規制의 緩和(여신관리 시행세칙 개정 1994. 1)

기존의 여신관리제도에 의하면 總貸出基準 5대 및 30대 계열에 대한 銀行貸出금이 銀行別 總貸出金の 일정비율 이내로 되도록 與信限度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에 따라 기업집단별로 3개 이내의 主力企業(主力業體)을 여신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18개의 주력업체 중 78개의 기업은 여신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40개사는 여전히 바스켓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주력기업의 영위업종과 관련된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투자와 주력기업의 제품생산에 제공되는 공장용 부동산 취득 등의 경우에는 自救努力義務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2) 海外金融의 圓滑化

海外證券 發行物量 조정시 主力企業인 경우 非主力企業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1994. 3; “해외증권 발행물량 조정기준” 개정).

3) 公正去來法上의 出資總額制限 緩和(1995. 4 公正거래법시행령 개정)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의하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他企業에 대한 出資는 自己純資産의 25% 이내로 制限(공정거래법 제10조)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에 따라 非主力企業이 主力企業에 투자하거나 主力企業이 主力業種 영위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7년간 出資總額制限의 例外를 認定받고 있다.

4) 銀行法上 同一人에 대한 與信限度 制限緩和(1995. 4 “은행법시행령” 개정)

은행법(제27조)상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에 의하면 대출한도의 경우는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한도의 경우는 자기자본의 30% 한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에 따라 金融機關의 동일인 대출한도 및 채무보증한도에서 주력기업인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其他

이외에 政府主導 技術開發事業에 主力企業을 優待하고(1994.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 개정), 工場立地面에서 優待措置方案을 講究하고 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중).

3. 業種專門化 施策의 問題點

가. 業種專門化 論理의 妥當性

業種專門化施策의 背景에는 “專門化 = 競爭力 強化”, “문어발식 多角化 = 非效率”이라는 等式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多角화와 專門化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이며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一義的인 理論은 없는 상태이다. 規模의 經濟가 대표적인 전문화의 논리라면, 範圍의 經濟, 산업 포트폴리오에 따른 危險管理와 景氣變動에의 適應能力, 시너지의 活用 등이 다각화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世界一流企業 中에도 專門化企業과 多角化企業은 混在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 항상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財閥의 業種多角화가 外國大企業에 비해 非關聯多角化의 比重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나 재벌들 스스로 專門化를 지향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약 57%로서 미국(19.4%), 일본(6.8%), 영국(6.0%)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表 3>을 참조). 한편 상위 5대 재벌의 경우 계열사수는 평균 40개를 상회하고 영위업종 또한 30.4개에 이르고 있으나(<表 4>를 참조). 그룹賣出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수의 계열사와 업종뿐이며 소수 정예계열사와 정예업종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인 수준을 점하고 있다(<表 5>를 참조). 결국 그룹계열사와 영위업종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專門化가 進行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表 3> 多角化 類型的 國際比較

(單位: %)

유형/국가	한국(1989)	일본(1973)	미국(1969)	영국(1970)
전업형	8.2	16.9	6.2	6.0
본업형	28.6	36.4	29.2	34.0
관련형	6.1	39.9	45.2	54.0
비관련형	57.1	6.8	19.4	6.0

資料: 서울대 경영연구소(199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재벌정책』, P.11에서 인용.

<表 4> 財閥의 系列企業과 營爲業種數

(單位: 個)

	5대	현대	삼성	대우	LG	선경	30대
계열기업 ¹⁾	210	49	50	25	53	33	616
영위업종수 ²⁾	30.4	36	34	27	32	23	19.1

註: 1) 1994년 6월.

2) 1993년 2단위 KSIC 기준.

資料: 공정거래위원회.

<表 5> 代表系列社¹⁾가 그룹賣出額에서 차지하는 比重

(單位: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삼성	91.25	91.16	91.32	92.24	90.21	87.34	83.45 ²⁾
현대	75.37	71.58	72.77	74.40	73.94	73.17	72.35
LG	73.93	70.06	70.24	70.09	68.46	68.90	68.17
대우	90.35	90.72	88.49	87.40	87.15	77.14	76.54

註: 1. 삼성생명의 경우 매출액 대신 수입보험료를 이용.

1) 1. 삼성 :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2. 현대 : 현대종합상사,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건설.

3. LG : LG상사, LG전자, LG반도체, 호남정유, LG화학.

4. 대우 :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2) 1994년 삼성생명의 경우 1994년 3월 결산자료를 대치함.

資料: 한국신용정보, 기업재무제표 DB.

나. 業種專門化 誘導를 위한 政府의 役割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는 기업 스스로 專門化를 추구하도록 전개되고 있으며 企業集團은 나름대로 長期戰略을 가지고 專門化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開放化의 진전으로 內需市場 및 海外市場에서 競爭이 심화되면 大企業集團의 多邊化行態는 적정한 專門化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며, 大企業集團이 향후 기술력 등 핵심적 경영자산을 축적하여 競爭力을 제고하고 國際化의 管理費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集中化·專門化戰略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는 기업집단만이 생존할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政府는 企業의 意思決定 및 資源配分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政策手段을 사용하여 大企業集團의 業種專門化를 유도하기보다는 競爭을 통한 專門化가 이루어지도록 시장여건을 개선하는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多邊化構造가 형성된 것은 多邊化의 利得(보호된 내수 시장의 고수익, 부동산·언론사 보유에 따른 부수적 이득, 금융업 등 요소시장 참여에 따른 안정성과 경쟁우위)이 多邊化의 費用(한계기업의 발생, 전문성 결여에 따른 비효율)을 능가했고, 外部借入, 系列社 出資, 內部去來 등을 통하여 多邊化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즉 문어발식 多角化는 기업생존에 유리한 인센티브 구조의 결과이며, 이러한 構造의 變化가 없으면 大企業集團의 多角化는 계속될 것이다.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은 기본적으로 銀行與信 및 直接金融에 의해서 主力 企業의 資金調達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業種專門化와 競爭力 強化를 도모하지만 몇몇 주력기업에 대해 資金供給을 擴大함으로써 業種專門化와 競爭力 強化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競爭力이란 기업노력의 총체적인 결과

로서 실현되는 것이지 단순히 資金供給의 擴大로 競爭力 強化를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競爭을 통한 專門化를 유도하는 기능이 경제전반에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에 主力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의 擴大로 業種專門化가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主力業體에 대한 與信規制의 緩和는 오히려 借入依存도와 金融費用을 上昇시켜 競爭力을 弱화시킬 수도 있다.

다. 政策目標의 優先順位와 政策手段의 適合性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에 의하면 主力企業에 대해 여신관리제도상의 여신한도관리를 해제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 은행차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나, 그 결과 財務構造의 惡化 및 所有集中의 深化의 可能性이 있다. 대기업집단의 경쟁력 강화가 財務構造 改善 및 所有集中 緩和라는 政策目標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主力業種制度의 경쟁력 제고의 肯定的 效果가 財務構造의 惡化 및 所有集中의 深化 등의 否定的 效果를 相殺할 만큼 뚜렷히 큰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편중여신의 완화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는 여신관리제도의 예외적용을 통하여 이들 목표를 희생하고 서로 상충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業種專門化의 手段으로 與信管理制度를 活用함에 따라 與信管理制度는 偏重與信 緩和, 財務構造 改善 등 고유의 목표 이외에 이들 목표와 상충할 수밖에 없는 業種專門化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매우 복잡한 운용체계를 가지게 되었다(<表 6>을 참조). 장기적으로 “與信管理制度는 축소·폐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력기업에 대해서부터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여신관리제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논리보다는 “업종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신관리제도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즉 人爲的인 大型化를 통한 業種專門化 誘導보다는 對內外 市場開放에 의한 競爭의 제고를 통한 專門化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主力業體 選定の 問題點

1994년 主力業種 및 主力業體 變更時 주력업체의 변동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났다. 새로이 추가된 2개 계열을 제외한 28개 계열 가운데 주력업체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10개 계열에 불과하며, 모든 주력업체가 변경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주력업체가 객관적 이유없이 빈번히 교체되는 것은 業種專門化의 본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며, 系列企業이 專門化 이외의 목적으로 主力業體를 選定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表 6> 與信管理制度的 目標와 手段

기본목표	중간목표	규제수단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	편중여신억제	동일인 여신한도제
		은행별 거액여신 총액한도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BASKET) 관리
	부실여신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부실장후여신 조기경보체제운용
		여신심사기능의 선진화 유도
		부실기업체 사후관리
	기업재무구조 구조개선	재무구조악화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 특별관리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 산정 및 관리
		부동산취득 사전승인 및 자구의무 부과
	경제력 집중 억제	계열확장 및 부동산보유 억제
소유분산 촉진 (주식분산우량기업체 제도)		
금융자금의 균점배분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BASKET) 관리

資料: 은행감독원.

4. 主力業體²⁾의 企業成果 分析

가. 財務構造 및 金融費用

主力業體의 평균적인 財務構造는 여타 집단에 비해 매우 不健全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負債比率의 경우 30대 企業集團이 357.0%, 上場企業이 298.3%, 大企業(製造業)이 282.9%인 데 비해 주력업체는 343.0%에 이르고 있으며(1994년 기준), 借入金依存度 역시 30대 기업집단이 48.4%, 상장기업이 45.7%, 대기업(제조업)이 45.7%인 데 반해 주력업체는 무려 52.6%에 이르고 있다(1994년 기준). 自己資本比率 및 流動比率에 있어서도 主力業體는 상장기업 및 대기업(제조업)에 비해 건전하지 못하며, 借入金依存도와 유동비율은 中小企業보다도 劣惡한 상태이다. 또한 個別主力業體의 財務構造가 그 주력업체가 속해 있는 大企業集團의 平均的인 財務構造에 비해서도 不健全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附表>를 참조).

이러한 主力業體의 불건전한 財務構造는 이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加重시키고 있다. 1990~1994년 기간중 賣出額 대비 金融費用의 比率 및 總費用 대비 금융비용의 비율을 보면 30대 기업집단이 大企業(製造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30대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主力業體의 경우는 대기업(제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주력업체의 이들 비율은 中小企業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과중한 金融費用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본절의 주력업체는 1991년에 주력업체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하여 주력업체로 남아있는 5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임.

主力業體의 財務構造의 不健全性 및 높은 금융비용부담은 主力業體制度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관찰되고 있으며, 主力業體制度가 도입된 1991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表 7> 企業의 資産·資本 및 金融費用關係 比率

(單位: %)

		1990	1991	1992	1993	1994
부채비율	주력업체	330.6	352.9	368.9	336.1	343.0
	30대기업집단	351.0	369.8	384.0	348.4	357.0
	상장기업	273.2	294.7	307.6	288.5	298.3
	제조업	286.3	309.2	319.7	294.9	302.5
	대기업	274.5	290.6	303.7	273.5	282.9
	중소기업	339.5	415.5	419.6	388.1	394.2
차입금의존도	주력업체	53.0	52.5	55.3	54.3	52.6
	30대기업집단	48.6	49.3	50.2	49.8	48.4
	상장기업	43.3	44.4	45.9	45.3	45.7
	제조업	42.8	44.6	47.2	46.8	44.5
	대기업	43.2	45.0	47.9	47.7	45.7
	중소기업	41.6	43.1	44.3	43.7	40.3
자기자본비율	주력업체	23.1	22.0	21.3	22.9	22.6
	30대기업집단	22.0	21.3	20.7	22.3	21.9
	상장기업	26.6	25.3	24.5	25.7	25.1
	제조업	25.9	24.4	23.8	25.3	24.8
	대기업	26.7	25.6	24.8	26.8	26.1
	중소기업	22.8	19.4	19.2	20.5	20.2
유동비율	주력업체	95.1	85.5	80.0	84.6	89.5
	30대기업집단	97.0	92.2	88.8	92.9	94.7
	상장기업	99.8	96.2	94.2	98.2	99.0
	제조업	99.4	95.8	92.8	94.1	94.6
	대기업	99.4	96.1	93.3	95.0	95.5
	중소기업	99.4	94.5	91.1	92.0	92.0
금융비용대매출액	주력업체	5.8	7.0	8.0	7.4	6.9
	30대기업집단	4.6	5.1	5.6	5.1	5.0
	상장기업	4.8	5.3	5.7	5.3	5.3
	제조업	5.1	5.7	6.3	5.9	5.6
	대기업	5.4	6.1	6.8	6.5	6.2
	중소기업	4.3	4.4	4.8	4.6	4.3
금융비용대총비용	주력업체	6.3	7.8	8.9	8.3	8.0
	30대기업집단	4.7	5.2	5.6	5.1	5.0
	상장기업	4.9	5.4	5.8	5.4	5.4
	제조업	5.1	5.6	6.2	5.8	5.6
	대기업	5.3	6.0	6.6	6.4	6.1
	중소기업	4.4	4.4	4.7	4.6	4.3

資料: 한국신용정보, 기업재무제표 DB.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은행감독원.

나. 收益性 및 成長性

主力業體의 賣出額營業利益率은 여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1990~1994 기간중) 賣出額經常利益率은 높은 金融費用으로 말미암아 여타 그룹에 비해 오히려 낮거나(1990~1993년) 크게 높지 않은 편이다(1994년). 1994년을 제외하고 主力業體의 賣出額經常利益率은 30大企業集團, 上場企業, 大企業(製造業)보다 낮게 실현되었으며, 中小企業보다 낮게 실현된 경우도 있다(1990년, 1991년, 1993년). 主力業體의 總資本經常利益率, 企業經常利益率 및 自己資本純利益率도 매출액경상이익률과 마찬가지로 1994년을 제외하고는 여타 그룹에 비해 낮게 실현되었다.

1994년의 경우 主力業體의 收益性 관련 지표가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호전되었는데, 이는 주력업체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및 중화학 분야에서 기업의 當期純利益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1994년의 당기순이익이 9,500억원으로 1993년의 1,600억원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대표적인 주력업체들인 LG반도체, LG전자, LG화학,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등도 전년대비 2~3배의 당기순이익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1994년중 30대 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이 약 3조원으로 삼성전자 1개사의 당기순이익이 30% 이상을 점하고 있다.

기업의 成長性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산증가율, 유형고정자산증가율 및 매출액증가율 등을 보면 主力業體가 여타 그룹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형고정자산증가율의 경우 주력업체와 여타 그룹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主力業體가 이 기간동안 土地, 建物, 機械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했음을 의미한다.

다. 綜合

主力業體들은 활발한 투자를 통해 外形的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相對的으로 열악한 財務構造와 높은 금융비용부담으로 收益性은 여타 그룹에 비해 좋지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은 주력업체의 기업성장 패턴(높은 성장률, 불건전한 재무구조, 취약한 수익성)은 主力業種制度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관찰되고 있으므로 주력업종제도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력업종제도가 이와 같은 성장패턴을 固着化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8> 企業의 收益性 比率

(單位: %)

		1990	1991	1992	1993	1994
매출액영업이익률	주력업체	7.2	8.1	8.9	9.6	12.1
	30대기업집단	5.1	5.5	5.6	5.9	6.6
	상장기업	6.6	6.9	6.8	7.0	7.3
	제조업	6.5	6.6	6.6	7.0	7.7
	대기업	6.7	7.2	7.4	8.0	8.6
	중소기업	5.9	4.7	4.0	5.0	5.3
매출액경상이익률	주력업체	1.6	0.9	1.1	1.0	4.2
	30대기업집단	1.3	1.1	0.9	1.0	2.1
	상장기업	2.7	2.5	2.2	2.2	2.9
	제조업	2.3	1.8	1.5	1.7	2.7
	대기업	2.2	1.8	1.8	1.9	3.1
	중소기업	2.6	1.5	0.5	1.3	1.9
총자본경상이익률	주력업체	1.4	0.7	0.8	0.8	3.5
	30대기업집단	1.5	1.2	1.0	1.1	2.3
	상장기업	2.7	2.4	2.1	2.0	2.8
	제조업	2.4	1.8	1.4	1.6	2.6
	대기업	2.1	1.7	1.6	1.6	2.7
	중소기업	3.6	2.0	0.6	1.6	2.5
기업경상이익률	주력업체	6.7	6.6	7.0	6.6	9.3
	30대기업집단	6.7	6.9	7.1	6.7	7.9
	상장기업	7.4	7.6	7.6	7.1	8.0
	제조업	7.8	7.5	7.4	7.1	8.1
	대기업	7.3	7.3	7.5	7.1	8.1
	중소기업	9.5	8.1	6.8	7.4	8.1
자기자본순이익률	주력업체	3.5	1.9	1.7	1.1	11.0
	30대기업집단	3.7	3.6	2.3	2.5	7.1
	상장기업	5.8	6.2	4.7	4.2	7.4
	제조업	5.5	5.5	3.4	4.2	7.6
	대기업	4.7	5.4	4.0	4.1	7.3
	중소기업	9.3	6.2	-0.4	5.0	8.9

資料: 한국신용정보, 기업재무제표 DB,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表 9> 企業의 成長性關係 比率

(單位: %)

		1990	1991	1992	1993	1994
총 자 산 증 가 율	주력업체	32.1	32.8	14.1	10.6	20.6
	30대기업집단	29.0	26.1	14.4	12.0	22.1
	상장기업	23.2	21.9	13.9	11.0	14.1
	제조업	23.7	22.4	12.0	11.2	16.9
	대기업	23.9	23.1	12.6	11.0	16.9
	중소기업	23.1	19.6	9.2	12.0	16.7
유형 고정 자산 증가 율	주력업체	28.8	32.0	15.6	15.5	18.6
	30대기업집단	25.8	25.2	14.3	15.6	19.9
	상장기업	17.2	19.8	13.3	12.3	6.1
	제조업	18.8	20.3	10.9	13.2	13.2
	대기업	17.9	20.4	11.2	13.6	13.5
	중소기업	23.1	19.8	9.0	11.7	11.9
매 출 액 증 가 율	주력업체	19.8	21.9	16.2	14.5	25.3
	30대기업집단	21.2	24.5	17.0	13.2	21.1
	상장기업	19.8	21.7	14.6	11.2	15.8
	제조업	18.6	17.6	10.1	9.9	18.2
	대기업	19.6	17.8	11.5	11.2	19.0
	중소기업	16.2	16.8	5.9	7.1	16.5

資料: 한국신용정보, 기업재무제표 DB.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5. 業種專門化 施策에 대한 評價

가. 個別施策에 대한 評價

1) 與信管理 解除

1987년 與信限度管理의 강화로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銀行貸出金이 전체 은행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8년말의 23.7%에서 1995년말에는 13.9%로 하락하여 제1금융권에서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偏重與信은 완화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신관리제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義務貸出比率 調整 등 中小企業金融政策의 強化 및 大企業의 탈은행화현상의 複合的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자·종금·보험·리스 등 여신한도관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2금융권의 경우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5년말 현재 38%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융시장 전체에서 30대 계열기업군에 이루어지는 여신의 비중은 2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한도관리가 관리대상대출금에만 적용되고 근년에 들어 관리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限度管理의 实效性이 크게 감소했다. 限度管理除外貸出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30대 계열기업군의 管理對象貸出金이 總貸出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8년의 72.5%에서 1995년에는 40.9%로 크게 하락하여 與信限度管理의 偏重與信 緩和效果가 그만큼 낮아졌다. 특히 한도관리제의 대출금의 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主力業體에 대한 대출금은 연평균 7.3%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管理對象貸出金은 연평균 1.4%의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여신한도관리의 实效性 저하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도관리제의 대출은 주력업종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0년과 비교

해 볼 때 5년 동안 2배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1995년의 경우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銀行貸出金 35조 2,930억원 가운데 51.5%인 18조 1,710억원이 主力業體에게 대출되었다.

결국 主力業體에 대한 與信管理 解除는 銀行貸出을 통해 이들 기업에게 資金供給을 확대한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與信限度管理의 實效性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表 10> 30대 계별기업군의 貸出金占有¹⁾ 및 主力業體 貸出金 現況

(單位: 10億원,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 은행금융기관								
은행 총대출금 ²⁾ (A)	78,321	97,610	120,437	137,407	159,787	180,019	218,699	253,573
30대 총대출금(B)	18,572	20,235	23,818	26,788	30,372	29,938	32,483	35,29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대 관리대상 대출금(C)	13,473	12,096	13,329	12,032	12,890	12,862	14,427	14,444
	(72.5)	(59.8)	(56.0)	(44.9)	(42.4)	(43.0)	(44.4)	(40.9)
30대 관리대상 제외대출금 ³⁾ (D)	5,099	8,139	10,489	14,757	17,482	17,077	18,056	20,849
	(27.5)	(40.2)	(44.0)	(55.1)	(57.6)	(57.0)	(55.6)	(59.1)
주력업체대출금(E)	—	—	—	13,906	15,790	15,190	15,409	18,171
30대 대출금 점유율(B/A)	23.7	20.7	19.8	19.5	19.0	16.6	14.8	13.9
30대 관리대상 대출금 점유율(C/A)	17.2	12.4	11.1	8.7	8.0	7.1	11.2	5.7
E/B	—	—	—	51.9	52.0	50.7	47.4	51.5
E/D	—	—	—	94.2	90.3	88.9	85.3	87.1
(2) 제2금융권								
제2금융권 총대출금 ⁴⁾ (F)	21,760	31,791	39,469	55,496	73,803	85,934	102,354	137,210
30대 총대출금(G)	7,047	11,640	14,902	20,316	26,547	31,926	38,128	52,689
30대 대출금 점유율(G/F)	32.4	36.6	37.8	36.6	35.9	37.1	37.2	38.4
(3) 금융기관 전체								
금융기관 전체 대출금(A+F)	100,081	129,401	159,906	192,903	233,589	265,953	321,053	390,782
30대 총대출금(B+G)	25,169	31,875	38,720	47,103	56,919	61,864	70,610	87,981
30대 대출금 점유율((B+G)/(A+F))	25.6	24.6	24.2	24.4	24.3	23.2	21.9	21.5
B/(B+G)	72.5	63.5	61.5	56.8	53.3	48.4	46.0	40.1

註: 1) 대출금의 범위는 국내 전금융기관(은행 및 제2금융권)의 원화 및 외화대출금, 신탁대출금 및 국내 금융기관 해외지점대출금을 포함.

2) 은행 총대출금은 예금은행, 개발기관, 은행신탁계정의 대출금의 합계임.

3) 관리대상 제외대출금 종류:

1988년말: 특별외화대출, 제2금융권 업체에 대한 대출, 산업합리화 관련대출

1989~90년말: 특별외화대출, 산업합리화 관련대출, 국내은행 해외지점대출, 연불금융.

1991~95년 12월말: 주력업체대출, 주식분산 우량업체대출, 국내은행 해외지점대출, 연불금융.

4) 제2금융권 총대출금은 투금사, 중금사, 보험사, 리스사의 대출금의 합계임.

資料: 은행감독원, 재정경제원, 정병휴·양영식(1992), p 105.

<表 11> 30대 계열기업군의 貸出金 增加率 추이(1989~1995)

(單位: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89-95 평균
(1)은행금융기관								
은행 총대출금	24.6	23.4	14.1	16.3	12.7	21.5	15.9	18.4
30대 총대출금	9.4	17.2	12.5	13.4	-1.4	8.5	8.7	9.8
30대 관리대상 대출금	-10.2	10.2	-9.7	7.1	-0.2	12.2	0.1	1.4
30대 관리대상 제외대출금	59.6	28.9	40.7	18.7	-2.3	5.7	15.5	23.8
주력업체대출금 ¹⁾	—	—	—	13.5	-3.8	1.4	17.9	7.25
(2) 제2금융권								
제2금융권 총대출금	46.1	24.2	40.6	33.0	16.4	19.1	34.1	30.5
30대 총대출금	65.2	28.0	36.3	30.7	20.3	19.4	38.2	34.0
(3) 금융기관 전체								
금융기관 전체 대출금	29.3	23.6	20.6	21.1	13.9	20.7	21.7	21.6
30대 총대출금	26.6	21.5	21.7	20.8	8.7	14.1	24.6	19.7

註: 1) 주력업체 대출금은 1991~1995 기간중 평균임.

資料: <표 10>과 동일.

한편 主力企業에 대한 與信管理 解除는 大企業集團 및 經濟內的 資源配分을 歪曲할 수 있다. 각 大企業集團은 業종의 將來性 및 系列社의 競爭力에 근거하여 主力業種 및 企業을 選定하기보다는 財務構造가 취약하거나 大規模 投資가 소요되는 業種 및 企業을 選擇하여 貸出 增大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30대 계열의 主力業體로 선정된 76개 기업들의 1994년 平均 負債比率은 324.9%로 상장기업의 平均부채비율 298.3%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30대 계열의 주력업체 중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업체가 35개사나 된다.

<表 12> 30대 系列企業群 主力業體의 內部持分率 現況(1994년말 현재)

(單位: 個, %)

	1~200%	201~300%	301~400%	401%이상	자본잠식	계	평균
1991	11	20	12	29	3	75	368.9
1992	8	21	11	30	3	73	375.7
1993	15	20	9	32	0	76	328.1
1994	10	23	10	35	0	78	324.9

資料: 은행감독원.

5대 財閥의 경우 主力企業이 石油化學, 自動車, 電氣·電子, 重工業 등 大規模投資가 필요한 業種에 集中되어 同 業種에서의 獨寡占의 市場構造 深化 및 市場進入制限 등으로 競爭을 약화시키고 重複·過剩投資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上位 재벌의 경우 수십개의 業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3개의 業체에만 主力하기 곤란하며, 대출금의 事後管理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主力業體에 대한 貸出金이 非主力業體로 轉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企業集團內的 主力企業의 높은 內部持分率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與信管理의 解除는 增資 등 直接金融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만큼 所有分散을 저해할 수 있다. 30대 재벌의 主力業體 中 非上場된 主力業體가 22개사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內部持分率이 50% 이상인 業體는 19개사에 달하고 있다.

<表 13> 30대 系列企業群 主力業體의 內部持分率 現況(1994년말 현재)

(單位: 個, %)

	1~10%	11~20%	21~30%	31~50%	51~99%	100%	계
1~5대	1	2	4	1	4	2	14
상장업체	1	2	4	1	1	0	9
비상장업체	0	0	0	0	3	2	5
6~30대	3	13	18	14	14	2	64
상장업체	3	13	18	11	2	0	47
비상장업체	0	0	2	3	12	2	17
30대 계	4	15	22	15	18	4	78
상장업체	4	15	22	12	3	0	56
비상장업체	0	0	0	3	15	4	22

資料: 은행감독원.

2) 出資總額制限 緩和

出資總額制限制度는 持株的出資, 系列的出資 및 間接相互出資³⁾에 의한 不合理한 企業擴張을 抑制하고 企業集團의 非關聯多角化에 의한 擴張을 抑制하기 위한 制度로서 30대 大規模 企業集團 소속 기업의 他企業에 대한 出資는 自己 純資産(자기자본 - 계열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 국고보조금)의 25%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이미 ① 공업발전법 또는 조감법에 의한 합리화조치에 따른 출자, ② 기소유주식의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으로 인한 출자, ③ 담보권의 실행 또는 貨物辨濟 수령에 따른 출자, ④ 보유주식의 평가가 증가되어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⑤ 부품생산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출자 등 많은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主力企業에 대한 出資總額制限의 추가적인 예외 인정(1995. 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他會社出資比率의 上昇, 主力業體의 內部持分率(계열사지분율) 上昇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므로 그동안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外形擴大를 總量的으로 규제하고 支配權集中을 抑制하려는 出資規制制度의 도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1987~1995년 기간 동안 30대 기업집단의 他會社出資比率, 自己資本比率, 內部持分率 등은 뚜렷한 개선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효과가 出資規制制度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系列社持分率 및 他會社出資比率의 減少는 出資規制와 밀접히 관련된다. 왜냐하면 출자총액 제한에 직면한 대기업집단들은 출자한도초과금액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든지 기존의 출자분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계열사지분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3) 持株的出資는 갑 $\begin{cases} \rightarrow \text{을} \\ \rightarrow \text{병} \\ \rightarrow \text{정} \end{cases}$, 系列的出資는 갑 \rightarrow 을 \rightarrow 병, 間接相互出資는 갑 \rightarrow 을 \rightarrow 병의 형태를 취한다. 한편 직접상호출자(갑 \leftrightarrow 을)는 상호출자금지제도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企業集團의 他會社出資, 財務構造, 內部持分率 등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볼 때 30대 企業集團의 他會社出資, 財務構造, 所有集中은 개선할 여지가 여전히 많고 主力企業의 경우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表 14> 出資總額限度制度의 施行成果 : 30대 企業集團

(單位: %)

	1987	1989	1991	1993	1994	1995
타회사출자비율(순자산액 대비)	43.9	28.9	32.5	28.0	26.8	26.3
자기자본비율	16.1	19.2	19.8	19.0	20.1	19.9
내부지분율 (계열사지분율)	56.2 (40.4)	44.8 (30.0)	47.0 (32.9)	43.4 (33.1)	42.7 (33.1)	43.3 (32.8)

資料: 공정거래위원회.

3) 同一인에 대한 與信限度 例外認定

은행법상 同一인에 대한 與信限度 規制는 金融機關 資産運用의 건전성 확보와 金融資金의 균점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金融機關의 同一인에 대한 貸出限度는 銀行 自己資本의 15%, 同一인에 대한 支給保證限度는 自己資本의 30%로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에는 ① 외화를 획득하거나 절약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 ②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물자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거나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④ 업종전문화 유도 시책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조항이 있다. 예외 조항의 경우는 최대 5%의 超過限度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은행감독원의 事前承認이 필요하므로 은행들은 예외규정의 적용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1995년의 경우 10건 정도가 예외 인정을 받는 데 그침으로써 主力企業을 支援하는 手段으로서의 有效性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海外證券 發行時 優待

해외증권 발행물량 조정시 主力企業인 경우 非主力企業에 우선한다는 기준에 의거하여 해외증권발행물량을 허용받은 경우는 1995년도 2건에 1억 2,000만달러에 불과하다. 1995년도에 이루어진 총조정물량이 51건에 22억 9,530만달러 임을 감안하면 주력업체에 대한 지원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 편이다.

나. 綜合的 評價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규제에 대한 완화를 통해 主力企業 및 主力業種에 대해 資金供給을 擴大하여 企業의 競爭力을 強化하고자 하는 政策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은 (i) 資金供給 擴大效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歪曲效果(편중여신, 재무구조의 악화, 경제력집중)가 있거나 (ii) 다른 歪曲效果가 없는 경우에는 資金供給 擴大效果가 미미한 것으로 評價된다. 主力企業에 대해서 與信限度管理 對象에서 除外하는 措置와 出資總額制限 緩和措置로 主力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을 원활하게 하는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肯定的 寄與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편중여신완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與信管理制度 및 經濟力集中 緩和를 目的으로 하는 出資規制制度의 도입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한편 主力企業에 대한 은행법상 同一人 與信限度 例外認定 및 해외증권 발행시 優先權을 부여하는 조치는 主力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을 擴大하는 데 있어서 큰 實效性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業種專門化施策의 窮極的인 目的인 專門化를 통한 競爭力 強化가 단순히 자금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성과를 보더라도 주력업체는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높은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지만 不健全한 財務構造와 높은 금융비용으로 대변되는 기업의 安全性과 健全성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주력업체의 收益性도 다른 기업에 비해 높지 않게 실현되고 있다. 主力業體의 이와 같은 성장유형은 30대 기업그룹의 평균적인 패턴보다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대기업 위주의 成長政策을 추구해 오던 과거 고도성장기의 기업의 성장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1991년 '主力業體制度'의 도입으로 시작된 業種專門化施策의 綜合的인 功過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業種專門化施策의 功過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업종전문화시책이 업종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아야 하나 전문화 및 경쟁력의 개념이 간단한 지표로 數量化하여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며, 生産性, 收益性, 成長性, 市場占有率 등 경쟁력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척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종전문화시책 이외의 다른 여러 정책·제도의 복합적인 결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계열회사의 수와 영위업종의 수 등의 지표상으로 통해 볼 때 업종전문화시책의 시행 이후에도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다각화 행태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表 15>를 참조).

<表 15> 30대 企業集團의 系列會社 및 營爲業種數

(單位: 個)

	1990	1992	1992	1993	1994	1995
계열회사수	557	570	590	604	616	623
영위업종수	11.8	12.1	16.0	18.3	19.1	18.5

資料: 공정거래위원회.

6. 結論 : 向後 金融支援政策의 方向

가. 偏重與信抑制制度의 必要性

與信管理規制의 緩和를 위해서는 (i) 金利自由化·資本自由化를 통한 자금의 초과수요현상 해소 (ii) 偏重與信抑制를 위한 制度整備 (iii) 中小企業金融支援制度의 擴充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1) 金利自由化·資本自由化를 통한 資金의 초과수요현상 해소

金利自由化가 완성되면 與信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資本自由化는 어느 기업이나 信用度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조달가능하게 되어 여신관리를 통한 자금배분기능이 불필요해지게 된다. 현재 3단계 金利自由化가 완료되었지만 銀行의 金利決定이 완전히 自律的으로 客觀的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통화당국이 여전히 暗默的으로 金利決定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은행들 역시 貸出審査機能을 제대로 행사하기보다는 여전히 기업의 외형적 규모에 의존하여 貸出與否 및 貸出條件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實質的인 金利自由化는 은행이 自律的으로 기업의 財務構造, 成長性 및 收益性 등에 기초하여 與信審査가 이루어질 때 완성될 수 있다. 최근에는 여유자금이 있어도 中小企業에 대한 대출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은행의 貸出審査機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資本自由化 역시 持續的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국·내외에서의 直接金融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는 결국 金融市場에서 자금의 超過需要 및 信用割當現象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2) 偏重與信緩和를 위한 制度整備

大企業에 대한 偏重與信은 金融機關의 貸出決定이 기업의 外形的 規模 및 相互支給保證에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大企業에 대한 偏重與信이 緩和되기 위해서는 (i) 편중여신의 構造的 原因이 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의 더욱 축소되어야 하고 (ii)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이 확충되어 기업의 信用度, 事業性 및 收益性 등에 의하여 與信運用이 이루어져야 한다.

3) 中小企業金融支援制度의 擴充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制度를 補完·擴充하여 금융운용의 形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自律化時代의 中小企業金融의 핵심적인 과제는 (i) 信用貸出의 活性化 (ii) 외상매출채권의 現金化率 제고 (iii) 중소형 지역밀착 금융기관의 業務活性化 등 中小企業金融의 근본적인 문제들(脆弱한 擔保力 및 交渉力, 정보의 非對稱性, 높은 去來費用)을 극복하는 것이다. 信用貸出을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短期的으로 信用保證制度를 擴充·整備하고 신용대출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법률적·관행상의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외상매출채권의 現金化率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短期的으로 商業어음割引이 보다 活性化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中·長期的으로는 信用情報機能의 擴充을 통해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評價機能을 補完해야 한다. 相互信用金庫, 信用協同組合, 새마을金庫 등 상호금융형·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적극 육성하여 規模·階層別로 거래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先決課題를 해결함으로써 偏重與信 緩和를 위한 與信管理制度

의 완화여건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신한도관리를 통한 偏重與信 緩和政策的 필요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主力業體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의 예외 인정은 여신한도관리의 實效性을 阻害하고, 主力業體의 財務構造를 악화하여 오히려 기업의 長期的인 競爭力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강하므로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나. 出資總額制限制度의 實效性 提高

현 시점에서 볼 때도 아직 30대 기업집단의 他會社出資, 財務構造, 所有集中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主力企業의 경우에는 이러한 指標로 볼 때 더욱 劣惡한 상태에 있다. 출자총액제한은 평균 43.3%에 이르는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을 중 소유·지배권 집중의 근원인 계열사지분을(32.8%)을 하락시키도록 작용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한 出資總額制限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업종별 進入·所有·投資規制, 업종전문화제도 등 미시적인 다변화규제와는 달리 업종무차별적 총량규제라는 점에서 市場歪曲效果가 비교적 작고, 고 성장에 따라 자본이 확대되는 대기업집단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과도기적으로는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력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상의 예외 인정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同一人 與信限度의 例外認定措置의 最小化

主力業體에 대하여 은행법상 同一人 與信限度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는 支援의 實效性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인 與信限度規制는 金融自律

化가 진전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金融監督事項이 될 것이므로 예외의 인정은 最小化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海外證券 발행시 優待措置의 實效性

主力業體에 대하여 海外證券 발행시 優待하는 조치는 歪曲效果는 없지만 지원의 實效性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綜合

中·長期的으로 볼 때 與信管理制度 및 出資總額制限制度는 모두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지만, 과도기 상태인 현재의 단계에서 볼 때 여신한도관리와 출자총액제한의 필요성은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제도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의 예외인정을 통해 業種專門化를 추진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參考文獻

- 공병호, 『정부주도형 업종전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1. 4.
- 국회 기업전문화연구회, 『기업전문화(I)』, 1995. 2.
- 김 건, 「대기업집단 업종전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분석』, 제78호, 1994. 6.
- 서울대 경영연구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재벌정책』, 1993.
- 선우석호·양원근, 『대기업집단 업종전문화 유도방안』, 산업연구원, 1990. 6.
- 양원근, 『대기업집단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1992. 4.
- 유승민, 「출자한도 25%의 논리와 당위」, 『신용경제』, 1994. 10.
- , 「재벌의 업종전문화와 정부의 역할」, 미발표 논문, 1993. 8.
- 김준경, 『여신관리제도의 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11.
- 정병휴·양영식, 『한국 재벌부문의 경제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2. 7.
-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백서』, 1995.
- 한국은행 여신관리국, 「여신관리제도의 현황 및 향후 추진과제」, 보도자료, 1995. 6.

<附表 1> 主力業體와 所屬大企業集團의 資産·資本比率 推移(1990)

(單位: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대전자산업(주)*	14.95	76.08	564.92	70.18
현대자동차(주)*	18.08	85.43	452.98	47.38
현대	20.14	84.79	394.12	43.98
삼성전자(주)*	20.08	96.39	397.31	54.50
삼성중공업(주)*	15.52	64.23	544.19	40.50
삼성종합화학(주)*	17.41	14.31	474.29	63.66
삼성	21.77	79.88	358.52	49.95
대우자동차(주)*	12.40	70.49	702.69	55.93
대우	24.61	108.14	305.77	48.83
LG반도체(주)*	9.16	59.98	991.93	75.34
LG전자(주)*	22.49	100.00	343.00	53.26
(주)LG화학	36.20	102.31	176.23	40.71
LG	24.51	97.98	307.14	46.36
(주)유공	20.08	120.26	395.46	64.71
(주)선경인더스트리*	19.51	83.18	410.69	64.33
SKC*	10.19	61.33	881.31	.
선경	19.96	104.44	398.87	56.93
(주)대한항공	13.44	61.10	616.89	61.04
한진	7.74	70.96	1163.13	58.71
쌍용정유(주)	34.92	99.38	186.41	33.69
쌍용양회공업(주)	36.93	109.14	170.79	34.12
쌍용자동차(주)*	26.16	117.08	282.22	44.67
쌍용	28.02	110.22	255.82	42.63
아시아자동차공업(주)	24.78	106.50	303.49	39.31
(주)기아기공*	10.11	131.45	879.90	55.51
기아특수강(주)*	17.98	142.24	446.75	63.20
기아	25.28	102.97	293.57	43.05
한화에너지*	18.43	92.69	442.60	52.58
한화종합화학(주)	34.83	117.09	186.97	44.26
(주)한화	35.93	84.09	178.28	44.16
한화	23.84	86.12	319.28	43.89
롯데제과(주)*	18.09	54.11	452.72	25.93
호남석유화학(주)	49.08	154.38	103.75	32.50
롯데	40.25	84.18	148.43	29.28
(주)금호*	24.42	66.31	308.76	61.02
금호석유화학(주)	56.01	68.93	78.55	33.22
(주)아시아나항공*	-4.04	29.81	-2572.39	92.95
금호	28.77	93.68	247.21	55.42
대림요업(주)	41.87	78.16	138.55	37.37
대림콘크리트공업(주)	36.82	122.43	171.48	19.21
대림	19.32	138.33	414.30	53.52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동양맥주(주)*	17.52	60.40	470.75	39.70
두산	20.11	103.06	396.72	47.94
동아건설산업(주)	20.00	166.66	393.93	52.87
대한통운(주)	28.48	118.66	222.82	39.69
동아건설	9.95	159.52	883.14	51.03
(주)한일합섬	28.21	193.28	254.43	60.25
경남모직(주)	32.54	151.04	207.32	55.57
한일	14.79	158.85	575.52	68.20
동양나이론(주)	27.61	90.66	260.45	53.87
효성중공업(주)*	13.80	110.19	624.73	54.89
효성	23.71	110.60	320.06	55.39
동국제강(주)	51.17	93.00	95.42	24.34
한국철강(주)	45.35	148.92	120.27	26.34
동국제강	34.88	126.14	186.47	39.34
삼미종합특수강(주)	34.91	151.19	186.44	54.25
삼미	30.60	119.55	226.70	55.90
만도기계(주)	32.06	126.66	211.23	42.72
한라중공업(주)*	-53.50	36.45	-286.20	115.74
한라	17.37	65.18	474.30	61.09
(주)코오롱	27.37	117.38	261.94	55.05
코오롱유화(주)	48.87	143.43	104.35	28.82
코오롱	26.75	127.47	271.99	42.44
(주)진로	22.55	81.11	343.42	45.67
진로	10.37	77.43	862.28	60.56
동부제강	23.64	176.95	322.96	37.41
동부	25.57	125.88	291.02	41.79
고려합섬(주)	23.10	39.66	332.81	68.77
고려종합화학(주)*	12.23	20.47	717.41	83.50
고려석유화학(주)*	10.64	38.44	839.56	77.44
고합	19.87	45.65	403.24	70.90
극동건설(주)	28.13	225.30	255.47	44.20
극동요업(주)	38.52	138.20	159.60	37.02
극동건설	20.77	187.40	252.25	28.92
(주)우성건설	18.72	139.53	434.24	44.21
우성건설	16.73	134.57	497.50	48.58
(주)벽산	32.54	104.95	207.36	41.74
벽산건설(주)	21.45	131.10	366.18	50.28
벽산	19.45	120.69	412.97	44.13
(주)삼양사	30.84	116.77	223.12	41.48
삼남석유화학(주)	10.97	78.64	811.83	64.62
삼양				

註: *표시는 소속대기업집단의 평균보다 재무구조가 나쁜기업(4개의 지표중 3개이상)이 소속대기업집단의 평균보다 안 좋은 기업)을 의미.

資料: 한국신용정보 재무제표 DB.

<附表 2> 主力業體와 所屬大企業集團의 資産·資本比率 推移(1991)

(單位: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대전자산업(주)*	11.20	69.40	790.83	67.20
현대자동차(주)*	16.23	97.39	516.00	51.28
현대	18.57	86.20	437.27	46.21
삼성전자(주)*	17.97	74.80	456.30	53.99
삼성중공업(주)*	14.93	55.96	569.72	41.83
삼성종합화학(주)*	18.92	31.68	428.52	71.11
삼성	22.51	72.53	343.95	49.54
대우자동차(주)*	4.07	58.95	2351.38	61.66
대우	21.48	104.40	365.26	51.97
엘지전자(주)*	21.27	86.57	369.39	56.86
엘지반도체(주)*	9.58	44.31	943.47	76.97
(주)엘지화학	29.29	86.98	241.36	51.73
LG	22.45	92.88	345.08	51.24
(주)유공	32.35	95.06	208.72	51.84
(주)선경인더스트리*	17.41	91.90	473.70	65.23
SKC*	11.00	65.30	808.70	.
선경	25.22	91.25	295.87	52.45
(주)대한항공	11.15	59.12	781.99	39.08
한진	6.20	72.45	1495.28	46.11
쌍용정유(주)	42.72	117.61	134.07	29.81
쌍용양회공업(주)	32.73	96.24	205.54	36.60
쌍용자동차(주)*	29.82	128.97	235.39	46.50
쌍용	30.51	117.32	226.46	41.23
아시아자동차공업(주)*	21.32	91.03	369.13	49.96
(주)기아기공*	16.60	115.15	500.91	51.35
기아특수강(주)*	19.98	121.03	398.47	61.54
기아	22.90	106.69	335.93	44.42
한화에너지*	17.70	66.28	464.98	49.88
한화종합화학(주)	30.39	107.00	228.97	54.70
(주)한화	32.35	90.32	209.09	54.14
한화	21.39	76.80	367.39	51.99
롯데제과(주)*	15.55	58.46	542.91	37.04
호남석유화학(주)*	35.68	72.26	180.28	47.48
롯데	36.54	84.95	173.60	31.59
(주)금호*	19.23	60.12	419.51	66.47
금호석유화학(주)	53.34	75.12	87.48	37.86
(주)아시아나항공*	4.47	42.13	2138.58	67.21
금호	25.58	85.67	290.73	56.47
대림요업(주)	32.15	69.14	210.95	46.32
대림콩크리트공업(주)	55.02	140.33	81.74	17.47
대림	17.35	137.60	473.63	53.59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동양맥주(주)	37.78	45.27	164.70	27.49
두산	24.96	91.37	300.48	45.30
동아건설산업(주)	17.03	147.70	472.72	45.89
대한통운(주)	24.02	115.09	312.38	37.74
동아건설	9.49	144.94	933.53	45.40
(주)한일합섬	21.71	188.26	360.55	65.77
경남모직(주)	28.97	105.31	245.19	62.40
한일	15.22	138.31	556.82	68.18
동양나이론(주)	25.58	86.73	290.19	58.44
효성중공업(주)	13.05	112.70	666.31	53.09
효성	22.93	109.80	335.40	54.25
동국제강(주)	43.12	109.13	131.92	33.17
한국철강(주)	35.33	129.61	182.96	31.34
동국제강	29.50	121.44	238.85	42.53
삼미종합특수강(주)	27.11	136.53	268.85	61.50
삼미	23.22	104.41	330.52	58.46
만도기계(주)	25.42	93.96	293.14	50.00
한라중공업(주)*	-30.51	42.39	-427.52	100.39
한라	13.26	58.89	653.25	63.32
(주)코오롱	26.80	95.41	273.19	56.93
코오롱유화(주)	41.86	126.13	138.80	36.57
코오롱	26.47	121.28	277.64	44.32
(주)진로	23.84	113.78	319.50	51.80
진로	7.88	75.82	1167.39	70.17
동부제강	27.45	161.96	264.32	37.09
동부	24.73	111.46	304.20	41.81
고려합섬(주)	18.63	61.13	436.77	70.00
고려종합화학(주)*	12.69	8.18	687.93	79.13
고려석유화학(주)*	13.73	38.94	628.41	82.54
고합	17.66	54.74	466.19	70.25
극동건설(주)	27.21	200.06	267.52	38.41
극동요업(주)	29.96	103.16	233.74	39.58
극동건설	20.36	179.43	274.36	28.94
우성건설*	13.78	121.80	625.42	47.89
우성건설	15.11	123.73	561.40	48.54
(주)벽산	30.85	95.19	224.15	41.27
벽산건설(주)*	13.09	124.10	663.53	62.13
벽산	15.23	118.31	554.66	49.81
(주)삼양사	31.73	118.55	214.63	37.50
삼남석유화학(주)	17.07	70.45	485.73	52.99
삼양				

註: *표시는 소속대기업집단의 평균보다 재무구조가 나쁜기업(4개의 지표중 3개이상)이 소속대기업집단의 평균보다 안 좋은 기업)을 의미.

資料: 한국신용정보 재무제표 DB.

<附表 3> 主力業體와 所屬大企業集團의 資産·資本比率 推移(1992)

(單位: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대전자산업(주)*	10.11	61.08	888.77	72.15
현대자동차(주)	17.75	88.97	463.54	43.38
현대	19.29	83.75	418.23	45.45
삼성전자(주)*	18.53	71.59	439.72	59.29
삼성중공업(주)*	16.87	64.88	492.94	50.25
삼성종합화학(주)*	18.78	29.29	432.56	65.44
삼성	22.65	73.44	341.37	50.87
대우자동차(주)*	0.12	56.71	84957.14	69.72
대우	19.75	98.67	406.14	49.15
엘지전자(주)	23.95	85.99	317.54	53.05
엘지반도체(주)*	19.98	62.44	400.42	65.52
(주)엘지화학	28.84	68.81	246.78	53.85
LG	22.37	89.18	346.82	49.10
(주)유공	29.66	90.29	237.17	56.77
(주)선경인더스트리	35.36	99.41	182.83	51.44
SKC*	11.20	65.80	790.00	.
선경	26.10	95.84	283.03	53.44
(주)대한항공	11.34	53.82	778.96	37.89
한진	8.17	70.77	1120.38	44.89
쌍용정유(주)	40.99	113.55	143.97	33.27
쌍용양회공업(주)	32.47	90.61	208.02	42.06
쌍용자동차(주)*	27.40	108.47	264.91	57.08
쌍용	29.52	115.80	237.53	45.61
아시아자동차공업(주)	19.85	102.66	403.67	56.78
(주)기아기공	12.96	116.12	671.57	56.02
기아특수강(주)	20.59	83.98	385.72	66.30
기아	20.58	95.25	385.83	49.45
한화에너지*	11.71	61.10	754.10	58.53
한화종합화학(주)	26.33	78.28	279.84	59.36
(주)한화	28.69	83.00	248.53	56.41
한화	18.00	67.61	455.35	56.84
롯데제과(주)*	16.21	58.54	516.85	37.04
호남석유화학(주)*	32.91	76.03	203.89	52.67
롯데	36.05	88.36	177.32	32.26
(주)금호*	19.36	60.22	416.56	64.13
금호석유화학(주)	58.10	93.24	72.12	33.55
(주)아시아나항공*	4.20	41.67	2281.61	54.04
금호	23.00	85.39	334.60	55.46
대림요업(주)	32.88	70.76	204.11	45.26
대림콩크리트공업(주)	45.98	105.19	117.51	34.69
대림	17.57	128.98	467.20	56.25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동양맥주(주)	32.64	52.06	206.37	37.67
두산	22.07	89.43	353.04	52.69
동아건설산업(주)	17.92	139.98	454.03	50.17
대한통운(주)	24.71	72.30	303.81	42.95
동아건설	10.75	133.92	824.51	49.57
(주)한일합섬	14.14	101.83	607.45	71.25
경남모직(주)	27.30	105.21	266.36	64.76
한일	9.58	100.22	943.64	72.68
동양나이론(주)	25.16	81.95	297.46	60.28
효성중공업(주)	13.89	111.74	619.79	51.58
효성	23.34	102.63	328.31	55.90
동국제강(주)	38.32	90.96	160.95	39.87
한국철강(주)	30.68	95.30	225.99	45.14
동국제강	26.92	101.35	271.43	47.40
삼미종합특수강(주)*	20.03	89.77	399.15	67.70
삼미	23.22	104.41	330.52	58.46
만도기계(주)	26.98	73.90	270.71	44.62
한라중공업(주)*	-37.96	42.22	-412.94	114.67
한라	10.44	55.97	857.60	65.64
(주)코오롱	26.00	96.77	284.66	57.39
코오롱유화(주)	37.69	121.94	165.32	38.19
코오롱	25.85	119.03	286.80	44.78
(주)진로	17.88	99.99	459.34	63.72
진로	6.47	79.12	1444.71	71.52
동부제강	25.58	112.90	290.98	38.65
동부	23.74	113.86	321.15	42.74
고려합섬(주)	17.03	45.82	487.16	72.38
고려종합화학(주)*	8.33	10.71	1100.88	84.83
고려석유화학(주)*	10.11	48.30	889.53	82.88
고합	15.70	49.55	536.56	71.54
극동건설(주)	23.12	172.59	332.57	43.96
극동요업(주)	30.08	82.04	232.47	7.58
극동건설	18.61	160.62	331.55	32.70
(주)우성건설	12.97	129.52	671.26	50.36
우성건설	11.03	116.11	806.53	55.08
(주)벽산	33.76	104.23	196.22	38.72
벽산건설(주)*	14.30	123.09	598.54	62.00
벽산	16.63	116.07	500.94	50.04
(주)삼양사	30.52	140.46	227.38	43.43
삼남석유화학(주)	28.45	94.60	251.47	44.38
삼양				

註: *표시는 소속대기업집단의 평균보다 재무구조가 나쁜기업(4개의 지표중 3개이상)이 소속대기업집단의 평균보다 안좋은 기업)을 의미.

資料: 한국신용정보 재무제표 DB.

<附表 4> 主力業體와 所屬大企業集團의 資産·資本比率 推移(1993)

(單位: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대전자산업(주)*	14.76	69.13	577.49	62.89
현대자동차(주)*	22.65	97.38	341.52	37.25
현대	22.78	86.82	338.83	43.44
삼성전자(주)*	24.42	93.85	309.45	49.02
삼성중공업(주)*	24.91	72.95	301.40	41.99
삼성종합화학(주)*	12.44	35.98	704.14	81.99
삼성	24.98	86.80	300.19	47.89
대우자동차(주)*	14.60	83.41	584.86	67.63
대우	22.78	110.63	338.93	52.11
엘지전자(주)	34.30	89.62	191.51	43.99
엘지반도체(주)*	25.19	84.27	296.97	54.94
(주)엘지화학	31.01	76.92	222.50	53.39
LG	26.64	95.67	275.26	47.14
(주)유공	29.85	86.45	234.98	57.48
(주)선경인더스트리	36.16	90.01	176.53	51.55
SKC	11.30	58.00	787.60	.
선경	25.97	95.11	285.05	52.49
(주)대한항공*	10.39	53.16	862.90	36.30
한진	10.60	72.66	843.11	40.68
쌍용정유(주)	42.94	128.57	132.90	34.99
쌍용양회공업(주)*	34.88	75.70	186.67	41.26
쌍용자동차(주)	18.35	76.13	445.09	58.99
쌍용	29.38	110.80	240.25	47.06
아시아자동차공업(주)	20.72	93.28	382.51	57.92
(주)기아기공	11.70	112.54	754.92	56.76
기아특수강(주)	19.31	80.16	417.83	67.68
기아	19.16	90.65	421.79	53.95
한화에너지	11.25	70.85	789.27	64.08
한화종합화학(주)	26.23	83.40	281.30	62.34
(주)한화*	27.83	64.79	259.38	60.80
한화	18.13	67.49	451.29	59.54
롯데제과(주)	16.23	56.19	516.02	30.99
호남석유화학(주)	26.56	60.01	276.47	59.84
롯데	36.99	89.34	170.28	30.75
(주)금호*	17.95	66.72	457.14	66.23
금호석유화학(주)	62.20	103.94	60.77	28.44
(주)아시아나항공*	0.40	30.22	25113.35	50.90
금호	20.42	84.18	389.54	56.30
대림요업(주)	32.92	66.16	203.79	44.65
대림콘크리트공업(주)	40.50	99.86	146.91	44.28
대림	16.91	133.75	491.29	58.19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동양맥주(주)	30.10	50.88	232.17	41.76
두산	19.83	91.69	404.08	54.65
동아건설산업(주)	22.08	140.95	352.85	57.17
대한통운(주)	32.36	86.24	209.04	32.21
동아건설	16.15	137.30	519.04	53.45
(주)한일합섬*	7.75	104.14	1190.32	79.42
경남모직(주)	36.89	174.24	171.07	53.39
한일	10.16	99.43	883.32	71.31
동양나이론(주)*	25.38	83.97	293.94	61.90
효성중공업(주)	39.86	104.85	150.87	39.67
효성	28.53	105.45	250.40	54.64
동국제강(주)	40.11	70.32	149.31	38.45
한국철강(주)*	27.85	91.86	259.06	39.17
동국제강	28.91	101.92	245.81	43.28
삼미종합특수강(주)	12.01	87.50	732.91	69.92
삼미	8.33	73.08	1099.50	71.70
만도기계(주)	22.75	54.82	339.64	49.00
한라중공업(주)*	-37.18	40.15	-368.94	100.09
한라	6.15	55.39	1525.78	66.31
(주)코오롱	30.00	98.39	233.33	49.81
코오롱유화(주)	35.80	135.74	179.33	41.79
코오롱	28.31	120.64	253.20	42.08
(주)진로	20.34	101.93	391.60	59.69
진로	4.24	84.89	2257.23	67.73
동부제강	30.11	155.46	232.09	35.95
동부	28.27	113.28	253.63	39.60
고려합섬(주)	14.65	32.22	582.48	74.73
고려종합화학(주)*	3.67	10.70	2623.65	93.26
고려석유화학(주)*	12.27	33.66	715.00	76.26
고합	14.32	38.03	598.08	72.66
극동건설(주)	21.45	158.32	366.25	49.74
극동요업(주)	47.82	155.00	109.13	10.99
극동건설	20.25	146.10	353.86	44.44
(주)우성건설	14.09	171.09	609.70	60.21
우성건설	10.80	138.19	825.41	63.71
(주)벽산	31.18	105.42	220.67	49.09
벽산건설(주)	13.06	115.83	665.66	66.15
벽산	16.04	112.57	523.32	55.21
(주)삼양사	26.80	130.51	273.16	50.50
삼남석유화학(주)	36.15	110.28	176.65	36.70
삼양

註: *표시는 소속대기업집단의 평균보다 재무구조가 나쁜기업(4개의 지표중 3개이상)이 소속대기업집단의 평균보다 안좋은 기업)을 의미.

資料: 한국신용정보 재무제표 DB.

<附表 5> 主力業體와 所屬大企業集團의 資産·資本比率 推移(1994)

(單位: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대전자산업(주)*	13.74	90.00	627.94	53.02
현대자동차(주)	22.94	101.16	335.83	29.72
현대	20.64	91.05	384.33	44.25
삼성전자(주)	31.50	117.22	217.41	40.41
삼성중공업(주)*	23.63	70.42	323.13	44.31
삼성종합화학(주)*	17.67	42.05	466.04	76.53
삼성	28.11	92.42	255.70	42.85
대우자동차(주)*	13.69	98.90	630.36	65.11
대우	24.93	120.02	300.98	48.27
엘지전자(주)	28.23	79.09	254.21	45.97
엘지반도체(주)	33.86	133.33	195.31	44.53
(주)엘지화학	31.13	83.40	221.27	52.23
LG	25.72	98.41	288.66	44.54
(주)유공	26.66	85.90	275.10	60.01
(주)선경인더스트리	33.79	81.97	195.95	52.13
SKC*	12.10	52.60	723.40	.
선경	23.31	92.46	328.98	51.24
(주)대한항공*	12.51	59.09	699.56	32.45
한진	12.75	77.76	683.76	35.91
쌍용정유(주)	38.27	94.77	161.31	36.45
쌍용양회공업(주)	31.06	56.54	221.91	45.52
쌍용자동차(주)*	9.41	95.31	962.36	73.09
쌍용	24.17	99.28	313.58	51.36
아시아자동차공업(주)	20.11	141.57	397.32	55.88
(주)기아기공*	11.03	110.61	806.52	55.64
기아특수강(주)*	15.92	79.88	528.04	71.65
기아	17.61	81.22	467.72	52.47
한화에너지*	8.66	72.35	1054.47	64.82
한화종합화학(주)	25.99	117.31	284.72	61.48
(주)한화	27.85	76.31	259.02	56.64
한화	17.47	76.00	472.33	61.64
롯데제과(주)	14.19	56.08	604.85	37.67
호남석유화학(주)	32.67	73.98	206.09	47.51
롯데	37.46	88.51	166.92	29.38
(주)금호*	14.77	60.85	576.85	66.32
금호석유화학(주)	65.30	102.89	53.15	20.31
(주)아시아나항공*	1.28	37.33	7726.25	49.98
금호	20.94	101.57	375.71	54.50
대림요업(주)	32.54	88.35	207.33	44.88
대림콩크리트공업(주)	36.25	106.88	175.87	46.98
대림	15.37	126.14	550.42	58.92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입금의존도
동양맥주(주)	20.12	44.01	397.13	49.54
두산	16.31	85.69	512.91	56.94
동아건설산업(주)	21.84	128.30	357.93	55.44
대한통운(주)	31.71	100.36	215.38	34.32
동아건설	17.65	128.10	466.35	52.12
(주)한일합섬	11.88	80.58	741.83	76.72
경남모직(주)	39.25	179.33	154.76	50.14
한일	11.58	92.29	763.27	71.28
동양나이론(주)*	24.78	68.83	303.58	56.57
효성중공업(주)	33.17	96.25	201.44	40.39
효성	26.13	95.41	282.57	52.45
동국제강(주)	42.76	88.24	133.86	32.15
한국철강(주)*	32.85	98.92	204.44	38.00
동국제강	36.42	100.99	174.50	36.64
삼미종합특수강(주)	10.22	87.44	878.18	68.69
삼미	3.03	71.03	3199.58	69.86
만도기계(주)	20.63	53.75	384.65	46.09
한라중공업(주)*	-39.74	32.72	-351.64	106.96
한라	2.47	56.13	3942.85	65.47
(주)코오롱	29.19	79.35	242.63	47.45
코오롱유화(주)	31.88	124.28	213.72	41.49
코오롱	26.88	107.67	271.98	42.24
(주)진로	19.03	128.91	425.39	58.87
진로	2.37	87.69	4115.12	71.31
동부제강	30.08	112.22	232.41	32.52
동부	25.30	99.74	295.17	42.92
고려합섬(주)	14.20	45.23	604.27	75.10
고려종합화학(주)*	4.34	12.39	2202.27	92.90
고려석유화학(주)*	9.90	38.23	910.14	71.36
고합	13.55	47.72	637.58	72.45
극동건설(주)	21.30	158.27	369.46	48.61
극동요업(주)	53.70	142.13	86.21	22.80
극동건설	19.43	141.35	380.34	44.44
(주)우성건설	13.41	196.12	645.94	64.11
우성건설	9.32	148.14	972.15	67.07
(주)벽산	27.08	108.53	269.24	49.80
벽산건설(주)*	11.66	113.77	757.64	65.85
벽산	15.80	111.72	532.71	58.07
(주)삼양사	24.67	106.46	305.34	49.63
삼남석유화학(주)	25.63	85.05	290.21	45.84
삼양				

註: *표시는 소속대기업집단의 평균보다 재무구조가 나쁜기업(4개의 지표중 3개이상)이 소속대기업집단의 평균보다 안좋은 기업)을 의미.

資料: 한국신용정보 재무제표 DB.

金融開放에 따른 産業資本의
金融機關 所有에 있어서의 政策方向

崔 長 鳳

(韓國租稅研究院 先任研究委員)

目 次

< 要 約 >	59
I. 序	61
II. 現況 및 問題點	62
1. 金融産業 開放	62
2. 産業資本의 金融機關 所有規制	67
3. 産業資本의 金融機關 所有現況	69
4. 問題點	72
III. 政策方向	77
1. 産業資本의 金融機關 所有에 따른 副作用	77
2. 外國의 事例	80
3. 所有規制의 緩和와 金融監督의 強化	84
4. 金融機關 所有規制의 調整	90
IV. 結	99
< 參考文獻 >	101

< 要 約 >

지금 금융관련 국제협상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金融機關間에 ‘공정한 경쟁 여건(a 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의 課題이다. 이에 따라 국가간에 서로 차이를 보이는 金融規制들이 통일·조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간에 경쟁여건이 완전히 同一하게 되어 가는 것이다. 금융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自明하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 의 완화 내지 폐지가 필요하며 소유규제도 例外는 아니다.

다만 産業資本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는 여러 副作用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력 집중, 私金庫化, 불공정 거래 등의 副作用외에 무엇보다도 금융제도의 安全을 위한 중앙은행 재할인 등의 장치가 결과적으로는 金融機關을 소유하는 기업에게도 적용되어 정부 즉 국민이 負債가 많은 기업을 보호하게 되는 셈이 된다.

本稿는 産業資本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한편 그 부정적인 면은 극소화할 수 있는 소유규제의 원칙적인 基準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産業資本에 의한 金融機關의 소유관련 규제를 조정하는 方案을 제안하였다. 소유규제의 조정은 규제의 완화, 규제의 투명화, 규제의 형평성 확보 및 규제의 단순화 등의 方向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소유규제 완화의 副作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등의 정비외에 金融機關의 건전성, 나아가서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인 金融監督의 방안이 강조되었다.

즉, 지급결제기능을 지닌 銀行으로서의 특성을 중시하여 공정거래법상 30大 기업집단에 의한 시중은행의 소유·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규제를 유지 하되 비은행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10大 内外의 기업집단을 제외한 産業資本에게 비은행 소유·지배를 허용하는 方案이 제안되었다.

또한 일정한 條件 아래 10大 内外의 기업집단이 비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기업에 의해 소유·지배되는 지방은행과 함께 10大 内外의 기업집단에 의해 소유·지배되는 비은행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및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金融監督 등에 있어서 差異를 두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건전성 규제 및 감독, 타 금융업에의 출자제한 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條件이다.

점차 대규모 기업집단의 問題點이 소멸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차단벽(fire wall)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金融機關의 經營權이 안정되는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기관 소유로 인한 부정적인 면이 해소되는 與件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産業資本에 의한 金融機關의 소유규제는 더욱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政策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I. 序

金融(또는 금융산업, 금융기관, 금융기업)과 産業(또는 실물산업, 실물기업, 기업)間 所有問題는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經濟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이다. 金融이 안고 있는 현재의 취약한 경쟁력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업에게 金融機關의 所有를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하며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금융기관의 私金庫化 등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金融機關 所有에 대한 찬반 양론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현행 금융·산업간 소유구조가 불투명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간 소유문제는 금융자율화 등의 金融發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컨대 金融機關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金融機關 私金庫化 등의 問題點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과감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WTO협상, OECD가입 등이 추진되어 金融開放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의 금융기관간에 경영여건이 완전히 동일하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상대는 국내의 타 금융기관보다는 거대한 공룡과 같은 外國의 금융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미쓰비시銀行은 미쓰비시 기업집단에 소속된 주거래은행이며 미쓰비시 기업집단에는 보험회사, 신탁은행, 중공업, 전기, 종합상사 등이 소속되어 그 規模가 세계 중진국의 경제력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미쓰비시銀行은 東京銀行과 합병하여 세계 최대의 은행이 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外國의 대형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기관이 동등한 조건 아래서 경쟁해야 할 時代가 이미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産業資本에 의한 金融機關의 所有問題를 재점검할 때이다. 원칙적으로 所有規制가 금융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외국 금융기관에 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규제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유규제 조정에 따른 副作用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本稿는 이에 관련된 課題를 제시하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産業資本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규제의 내용을 살펴본 후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기관 소유현황을 금융기관별로 정리한다. 다음에는 産業資本의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副作用을 설명한 후 소유규제의 調整方案을 제시한다. 동시에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金融監督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I. 現況 및 問題點

1. 金融産業 開放

銀行의 경우 경제개발에 필요한 外資의 원활한 조달과 선진금융기법의 습득을 목적으로 1967년 미국의 체이스맨하탄은행 지점이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진출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 전반까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자조달창구로서의 役割이 중시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經常收支가 개선되면서 그 역할이 점차 국내은행과 동일시 되었다. 그 과정에서 1996년 2월말 현재 13개국 51개 은행이 70개 지점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國別로 보면 미국계의 11개 은행, 일본계의 14개 은행 및 유럽계의

11개 은행이 支店을 설치하였다.

현재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사무소 설치는 銀行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은행법은 국내은행과 시장진입에 差異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금융산업 개방은 대체로 完成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證券産業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일본계 증권회사의 국내 사무소가 설치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증권산업의 開放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선진국으로부터의 국내 금융시장 개방요구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1991년에 외국 증권회사의 지점 및 합작 증권회사의 신설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10월 영국의 Jardine Fleming 증권회사가 최초로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이후 1996년 3월 현재 미국계와 영국계가 각각 5개, 일본계가 3개, 홍콩계가 2개 그리고 프랑스 증권회사가 1개 등 총 16개 외국 증권회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다. 合作會社로는 1992년에 동방 페레그린 증권회사가 설립되었고 1996년에 한누리살로만 증권회사가 설립되었다. 특히 합작 증권회사의 경우 30大 계열기업군 및 기업집단은 국내출자자의 자격이 없으며 국내 출자자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어서 합작 증권회사가 외국 증권회사의 現地法人化되는 것이 방지되었다.

規制 側面에서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지점 및 사무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국내 증권회사와 差異가 없다. 최근에는 외국 증권회사라는 특성상 정책당국의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진출에 관한 基準이 완화되었다. 즉 증권업 영위기간이 종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경제적 수요심사 기준(ENT: Economic Needs Test)이 폐지되었다. 또한 복수지점 설치가 허용되면서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지 2년이 넘고 최근 2년간 흑자를 낸

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은 영업범위에 따른 영업기금을 추가로 도입할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의 지점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증권산업 개방정책의 影響으로 1995년 이후 미국계인 Morgan Stanley사 등 5개 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이 설치되었다.

投資信託産業 및 投資諮問産業의 경우 1993년 1월부터 외국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자문회사는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기존사의 지분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었다. 그 이후 외국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자문회사는 각각 1996년 12월과 1995년 12월부터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하여 해당 업무를 營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개방이 진행될 計劃이다.

개방계획에 따르면 合作 投資信託會社の 외국인 설립주체(제1대주주)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회사, 국내 설립주체(제1대주주)는 증권회사이고 10大 계열기업군에 소속된 증권회사도 합작 투자신탁회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은행, 보험회사 등의 金融機關은 제1대주주가 아닌 한 출자할 수 있다. 그 밖에 외국인 출자 비율은 49% 이하로 제한되나 1998년 12월 이후에는 그 제한이 폐지되며 국내외 出資者 모두에 대해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1인당 출자 한도는 30% 이하이다.

그리고 외국 투자신탁회사가 국내 기존 투자신탁회사에 投資할 경우 지분 참여비율은 10%에서 49%로 확대되었고(외국 1사의 지분비율은 5%에서 10%로 확대되었음) 1997년 이후에는 기존 투자신탁회사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동의하에 100%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1997년 12월 이후에는 모든 金融機關과 30大 계열기업군 및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외국인과 합작으로 투자자문회사를 設立할 수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이 100% 出資하는 투자

자문회사의 설립도 허용된다.

生命保險産業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보험산업 개방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정책당국은 1986년 12월 외국 생명보험회사 설립기준을 제정하고 1987년 6월에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립허가기준을, 1988년 3월에 합작 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와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의 設立을 허용하였다. 이에 1987년 4월 미국계 LINA사의 國內支店이 국내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7월에는 동부애트나 등의 合作會社가 설립되었다. 現地法人으로는 1990년에 미국계의 한국프루덴셜 생명보험회사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1995년말 현재에는 합작회사로 미국계 5개, 영국계와 캐나다계 각각 1개의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 진출해 있고 현지법인이 3개, 지점이 2개 진출해 있다.

損害保險産業의 경우 1960년대에 미국계인 AHA(American Home Assurance)와 AFIA(American Foreign Insurance Association)의 손해보험회사가 국내에 支店을 설치하였고 1979년에 미국계인 Marsh & McLennan 손해보험회사가 국내에 대리점의 형태로 진출하였다. 또한 현재 영국계 Royal회사가 동양손해보험회사에 17.8%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5년말 현재에는 국내에 3개의 외국손해보험회사의 지점이 있고 대리점이 3개, 지분참여가 1건이 있다.

保險産業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및 사무소 설립은 국내 보험회사와 規制面에서 차이가 없다. 보험업법상 내외국 보험업자에 대한 유일한 규정은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이나 그 규모로 볼 때 내외국 보험업자의 차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1997년부터 보험회사 설립허가

심사시에 경제적 需要審査制度가 폐지된다. 1997년 4월부터는 재보험의 완전 자유화 일정이 시행되고 보험브로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998년 4월에는 브로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그 밖에 1998년 4월부터 보험 계리업 및 손해 사정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국 금융기관에게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WTO協商 및 OECD加入의 과정에서 금융산업 및 금융서비스 시장이 대폭 개방될 것이다. 예컨대 현지법인 형태의 금융산업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며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外換關聯 去來도 자유화될 것이다. 또한 지급, 결제, 자문, 투자, 보험 등의 서비스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提供될 것이다. 예컨대 1997년부터 생명보험의 모든 종목에 국경초월(cross-border)의 去來가 허용되며 손해보험 중 해외여행자 보험, 선박 보험 및 장기상해 보험의 국경초월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서비스의 開放이 진전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개방은 국내 금융기관에게 외국의 거대한 金融機關과 동등한 條件 아래 직접 경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美國의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대형 금융집단, 日本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집단, 獨逸의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업 집단 등과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인 것이다. 이들 선진국의 대형 금융집단은 각국의 産業資本과 금융자본간 관계,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등에서의 特性에 따라 형성되었지만 이 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쟁상대가 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간 관계에 있어서 금융산업을 에워싸고 있는 제반 문제 특히 産業資本에 의한 金融機關의 所有問題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재점검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금융산업 개방에 따른 중요한 課題인 것이다.

2. 産業資本의 金融機關 所有規制

현재 産業資本에 의한 金融機關의 소유를 규제하는 내용을 보면 銀行의 경우 동일인(주주 1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의결권 주식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없도록 은행의 소유가 규제되고 있다. 다만 몇가지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지 않는 지방은행의 경우 동일인은 의결권 주식의 15%까지 소유할 수 있다. 또한 경영권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주식의 8%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정부의 주식 소유 및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에 대한 주식 소유는 예외이다.

특히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個人으로서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금융전업기업가에게는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가 의결권 주식의 12%이다. 다만 금융전업기업가 본인은 최소한 그를 포함한 동일인 지분의 2/3(8%)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제되어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주와 그 특수 관계인은 금융전업기업가가 될 수 없으며 감독당국은 도덕성, 전문성 및 자질 등에 대한 금융전업기업가의 資格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금융전업기업가에 의한 소유한도의 예외가 인정되는 금융전업기업가의 대상은행은 현재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 및 신한은행의 7개 은행이다.

證券會社의 경우에는 소유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다만 대주주 1인(주주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의 변경시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요구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유가 규제된다. 그리고 合作 證券會社의 경우 30大 기업집단은 지분소유에 참여할 수 없다.

投資信託會社의 경우 주주1인(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그 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은 의결권 주식의 30%(서울소재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2개 이상의 투자신탁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1인은 어느 한 투자신탁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투자신탁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그리고 合作 投資信託會社의 국내 제1대주주는 증권회사이며 10大 기업집단에 속한 증권회사도 국내 제1대주주가 될 수 있다.

또한 1998년 6월까지 투자신탁회사의 신규설립과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신탁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면서 증권회사가 제1대주주로서 신규설립과 전환을 주도하며 은행, 보험 등 金融機關의 참여도 허용되지만 기존 주주이외의 개인 및 비금융 기업의 참여는 배제되도록 소유규제가 설정되었다. 다만 동일 계열내에 증권회사가 없는 투자자문회사가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은행, 보험, 개인 등도 제1대주주가 되도록 허용되었다. 이 때 업계가 單獨出資(50% 이상)와 共同出資(10~30%의 대주주 4인 이상)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만 10大 계열기업군에 소속된 증권회사는 단독출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保險會社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15大 이내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계열기업군에 속한 회사, 그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및 이와 특수

한 관계에 있는 자는 1988년 5월 이후 설립된 생명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16~30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계열기업군에 속한 회사, 그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및 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보험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그 밖에 상호신용금고,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 시설대여회사, 신용카드전업회사 및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明示的인 소유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된 회사만이 설립할 수 있다.

3. 産業資本의 金融機關 所有現況

실제로 기업이 金融機關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銀行의 경우 기업집단에 의한 은행의 지분참여가 활발하며 10대 주주의 지분이 30% 이상을 차지하여 규제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아직 소유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몇개의 대주주가 담합하면 담합주주는 은행을 지배할 수 있으며 이미 다수의 지방은행은 産業資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대주주가 시중은행의 경영에 간여하지 않은 것은 비록 明示的인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확고하게 産業資本에 의한 金融機關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일반 국민도 기업집단의 금융기관 지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表 1> ~ <表 2> 참조).

證券會社의 경우에는 10대 기업집단 중에서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권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11~3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6개가 증권회사의 지분소유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産業資本에 의한 증권회사의 소유 및 지배는 매

<表 1> 銀行의 소유구조 현황(1994년말 현재)

(단위: 명, %)

	대주주(지분 1%이상)		3대주주 지분		
	수	지분율 계	1대	2대	3대
<시중은행>					
조 흥	12	42.7	증안기금 7.3	한국투신 6.3	태광산업 6.0
상 업	8	23.7	증안기금 7.2	삼성 6.8	한국투신 3.1
제 일	9	27.6	증안기금 7.0	대한투신 6.1	한국투신 5.9
한 일	15	42.7	증안기금 6.8	삼성 4.6	한국투신 4.5
서 신	11	28.9	증안기금 7.5	대한생명 4.6	삼성 3.5
(5개평균)	11	35.1	-	-	-
외 환	2	66.6	한은 65.3	QE Int'l Ltd 1.4	-
신 한	6	17.2	대한투신 5.1	한국투신 4.2	증안기금 3.0
한 미	12	66.1	BOA 29.4	대우 9.6	삼성 4.9
하 나	16	58.0	장신은 18.1	세광병원 9.0	노무라증권 3.8
보 램	15	54.4	코오롱 8.5	LG 7.8	두산 7.7
동 화	8	14.4	곡산군민 2.2	황해도민 2.1	개성시민 1.9
평 화	9	48.9	항만협회 7.7	포철,기은,국민은, 주택은 각 7.3	-
동 남	2	15.2	기업은행 7.6	국민은행 7.6	-
대 동	2	15.2	기업은행 7.6	국민은행 7.6	-
(시은평균)	9	38.0	-	-	-
<지방은행>					
대 구	11	28.9	증안기금 7.9	삼성 4.5	코오롱 3.2
부 산	10	44.6	롯데 22.6	증안기금 7.9	동국제강 3.6
충 청	14	52.2	한화 13.1	김영문 11.7	증안기금 8.0
광 주	7	29.6	증안기금 7.6	금호 6.9	교보생명 6.8
제 주	11	47.6	김보일 14.1	천마합섬 13.8	증안기금 5.7
경 기	9	36.9	신동아 10.0	증안기금 7.9	한진 7.1
전 북	13	47.4	삼양사 11.4	증안기금 8.1	호남식품 5.6
강 원	11	48.7	현대 25.0	증안기금 8.4	국민투신 3.4
경 남	14	44.6	효성 12.0	증안기금 8.2	동국제강 5.0
충 북	8	30.8	증안기금 9.6	대유증권 4.9	대유통상 4.5
(지은평균)	11	41.1	-	-	-
전체평균	10	39.3	-	-	-

資料: 소일섭(1996)

<表 2> 30大 기업집단의 주요 은행주식 소유현황(1994년말 현재)

(단위: %)

기업집단명	주식소유현황
1. 현대	제일은행(2.40), 한일은행(2.58), 서울은행(1.99), 신한은행(1.22), 강원은행(24.95)
2. 삼성	조흥은행(3.17), 상업은행(6.83), 제일은행(3.95), 한일은행(4.55), 서울은행(3.45), 신한은행(2.64), 한미은행(4.94), 하나은행(3.79), 보람은행(2.21), 평화은행(1.26), 대구은행(4.54), 부산은행(1.27), 광주은행(1.73), 경기은행(1.40), 전북은행(1.21), 강원은행(1.21), 경남은행(1.24)
3. LG	제일은행(3.18), 한일은행(3.01), 보람은행(7.82), 대구은행(1.30), 제주은행(1.11)
4. 대우	한미은행(9.58)
5. 선경	경기은행(3.94)
6. 쌍용	조흥은행(1.97), 하나은행(2.61)
7. 한진	한일은행(1.12), 하나은행(1.09), 경기은행(7.14)
8. 기아	제일은행(1.10)
9. 한화	충청은행(13.14) 강원은행(1.27)
10. 롯데	부산은행(22.58)
11. 금호	광주은행(6.89)
12. 두산	보람은행(7.66)
13. 대림	한일은행(3.75)
14. 한보	
15. 동아건설	서울은행(1.70), 전북은행(1.08)
16. 한라	
17. 효성	하나은행(2.12), 경남은행(12.00)
18. 동국제강	서울은행(1.26), 부산은행(3.58), 경남은행(4.97)
19. 진로	
20. 코오롱	보람은행(8.47), 대구은행(3.21)
21. 동양	
22. 한솔	
23. 동부	
24. 고합	
25. 해태	
26. 삼미	
27. 한일	
28. 극동건설	
29. 뉴코아	
30. 벽산	

우 진전된 상태에 있다. 그 밖에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시설대여회사 등에도 기업집단의 지분참여가 매우 활발하다. 상호신용금고에도 30대 이내의 기업집단이 소유에 참여하고 있다(<表 3> ~ <表 4> 참조).

生命保險會社의 경우 15대 기업집단 중에서 삼성(삼성생명), 동아건설(동아생명)이 생명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대(한국생명), LG(국민생명), 선경(중앙생명), 금호(아주생명)가 관련 회사를 통해 間接적으로 생명보험회사 소유에 참여하고 있다. 대우(교보생명)도 생명보험회사에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15대 기업집단 중 실질적으로 7개의 기업집단이 생명보험회사의 소유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16~3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동부(동부생명), 동양(동양생명), 코오롱(코오롱메트생명), 고합(고합뉴욕생명)이 생명보험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表 3> ~ <表 4> 참조).

損害保險會社의 경우에도 15대 기업집단 중 현대(현대해상), 삼성(삼성화재), LG(LG화재), 한진(동양화재), 쌍용(쌍용화재), 한화(제일화재)의 6개 기업집단이 이미 손해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16~3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동부(동부화재)가 손해보험회사의 지분에 참여하고 있다(<表 3> ~ <表 4> 참조).

4. 問題點

이미 외국 금융기관에게 국내 시장이 개방된 분야가 많지만 앞으로 WTO 협상, OECD가입 등에 따라 금융개방의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에 支店, 合作法人, 現地法人 등을 설립하여 영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국내 금융거래자가 외국에 존재하는 金融機關과 직접 거래하는

<表 3> 30大 기업집단의 非銀行 金融機關 소유현황(1995년말 기준)

기업집단명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금·종금
		생 보	손 보	
1. 현대	현대증권	(한국생명)	현대해상	현대종금
2. 삼성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세계투금
3. LG	LG증권	(국민생명)	LG화재	LG종금
4. 대우	대우증권	[교보생명]	-	한국종금
5. 선경	선경증권	(중앙생명)	-	인천투금
6. 쌍용	쌍용증권	-	쌍용화재	-
7. 한진	한진증권	-	동양화재	한불종금
8. 기아	-	-	-	아신투금
9. 한화	제일증권	-	제일화재	삼희투금
10. 롯데	-	-	-	-
11. 금호	-	(아주생명)	-	금호종금
12. 두산	-	-	-	-
13. 대림	서울증권	-	-	-
14. 한보	-	-	-	-
15. 동아건설	동아증권	동아생명	-	-
16. 한라	-	-	-	-
17. 효성	-	-	-	-
18. 동국제강	-	-	-	중앙투금
19. 진로	-	-	-	-
20. 코오롱	-	코오롱M	-	-
21. 동양	동양증권	동양생명	-	동양투금
22. 한솔	-	-	-	-
23. 동부	동부증권	동부애트나생명	동부화재	-
24. 고합	-	고합NY	-	-
25. 해태	-	-	-	대한투금
26. 삼미	-	-	-	-
27. 한일	부국증권	-	-	한일투금
28. 극동건설	동서증권	-	-	-
29. 뉴코아	-	-	-	-
30. 벽산	-	-	-	-

<表 3>의 계속

기업집단명	상호신용금고	투자자문	시설대여 등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1. 현대	-	현대투자	현대파이낸스	현대할부	-
2. 삼성	신세계	삼성투자	삼성카드	삼성할부	-
3. LG	부민	LG투자	LG신용카드	LG할부	-
4. 대우	-	대우투자	-	대우할부	대우전자창투
5. 선경	-	선경투자	-	-	-
6. 쌍용	-	쌍용투자	-	쌍용할부	-
7. 한진	-	-	-	-	-
8. 기아	-	-	-	기아포드할부	아신창투
9. 한화	-	제일투자	한화파이낸스	-	-
			제일팩토링	-	
10. 롯데	부은	-	부은리스	부은할부	-
11. 금호	-	-	-	금호주택할부	-
12. 두산	-	-	두산렌탈	-	두산창투
13. 대림	대한	-	-	-	-
14. 한보	한보	-	-	-	-
15. 동아건설	-	-	-	동아주택할부	-
16. 한라	-	-	-	-	한라창투
17. 효성	-	-	-	-	-
18. 동국제강	신중앙	-	-	-	-
19. 진로	-	우신투자	-	-	-
20. 코오롱	-	-	-	코오롱할부	-
21. 동양	-	동양투자	동양파이낸스	동양할부	동양창투
22. 한솔	한솔	-	한솔파이낸스	-	한솔창투
23. 동부	동부	-	-	동부주택할부	동부창투
24. 고합	-	-	-	서울할부	-
25. 해태	-	-	-	-	-
26. 삼미	-	-	-	-	-
27. 한일	신라	한일투자	-	-	-
28. 극동건설	극동	동서투자	동서팩토링	동서할부	-
29. 뉴코아	-	-	-	-	-
30. 벽산	벽산	-	-	-	벽산창투

註: ()은 간접적인 소유를 의미하며, 다만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대우가 제1대주주가 아님.

<表 4> 30大 기업집단의 주요 非銀行 金融機關 주식소유현황(1994년말 현재)

(단위: %)

기업집단명	주식소유 현황
1. 현대	현대종합금융(23.0), 현대증권(25.7), 현대해상화재(32.2), 한국투신(1.45), 대한투신(2.23), 국민투신(3.21), 현대할부금융(96.0), 현대투자자문(100)
2. 삼성	삼성생명(39.2), 삼성화재해상(15.5), 삼성신용카드(91.6), 삼성증권(19.3), 국민투신(5.84), 삼성투자자문(100), 삼성할부금융(100)
3. LG	LG종합금융(23.9), LG증권(11.7), LG화재해상(17.9), 부민상호신용금고(49.5), LG신용카드(90.8), 한국투신(2.25), 대한투신(2.23), 국민투신(4.86), LG할부금융(100), LG투자자문(100)
4. 대우	대우증권(15.1), 한국투신(3.70), 대한투신(4.46), 국민투신(4.60), 대우할부금융(100), 대우투자자문(100)
5. 선경	선경증권(15.2), 한국투신(0.25), 국민투신(0.83), 선경투자자문(100)
6. 쌍용	쌍용투자증권(27.4), 쌍용화재해상(18.2), 한국투신(0.45), 국민투신(1.39), 쌍용할부금융(37.5), 쌍용투자자문(100)
7. 한진	한불종합금융(32.0), 한진투자증권(49.7), 동양화재해상(23.5), 한국투신(0.47), 국민투신(1.93)
8. 기아	아신창업투자금융(90.0), 기아포드할부금융(?)
9. 한화	삼희투자금융(15.0), 제일증권(29.0), 제일화재해상(17.4), 한국투신(0.28), 국민투신(2.75), 제일투자자문(?)
10. 롯데	부은상호신용금고(92.7), 부산리스(?), 부산할부금융(?)
11. 금호	광주종합금융(13.7), 금호주택할부금융(90.0)
12. 두산	두산창업투자(100), 두산렌탈(100)
13. 대림	서울증권(39.1), 대한상호신용금고(87.5), 한국투신(0.31), 국민투신(1.11)
14. 한보	삼화상호신용금고(100)
15. 동아건설	동아증권(20.1), 동아생명(23.0), 동아주택할부금융(100)
16. 한라	한라창업투자(100.0)
17. 효성	
18. 동국제강	중앙투자금융(28.8), 신중앙상호신용금고(95.0), 국민투신(1.07)
19. 진로	우신투자자문(50.0)
20. 코오롱	코오롱메트생명보험(49.0), 코오롱할부금융(48.7)
21. 동양	동양증권(47.1), 동양생명(51.0), 동양투금(17.4), 동양투자자문(100), 동양파이낸스(100), 동양할부금융(100), 동양선물(61.5), 동양창업투자금융(100)
22. 한솔	한솔상호신용금고(44.69), 한솔파이낸스(?), 한솔창투(?)
23. 동부	동부상호신용금고(87.1), 동부증권(32.0), 한국자동차보험(41.3), 동부창업투자(100), 동부아트나생명(50.0), 동부주택할부금융(60.0)
24. 고합	고합NY(49.0)
25. 해태	대한투금(8.0)
26. 삼미	
27. 한일	부국증권(28.9), 한국투신(0.43), 국민투신(0.13), 신라상호신용금고(?)
28. 극동건설	극동상호신용금고(94.6), 동서증권(7.7), 한국투신(1.46), 대한투신(2.23), 국민투신(1.44), 동서투자자문(99.0), 동서팩토링(?), 동서할부금융(85.0)
29. 뉴코아	
30. 벽산	벽산상호신용금고(100.0), 벽산창업투자(99.7)

註: ?는 자료미비를 의미함.

국경초월 거래도 활발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쟁상대는 바로 동등한 경쟁조건 아래에 있게 될 외국 금융기관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 금융기관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는 産業資本에 의한 금융기관의 소유에 대한 규제도 정비의 대상이다. 국제적으로 동등한 경쟁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내 규제가 있다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다수의 대기업이 그 동안의 암묵적인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金融機關의 소유에 참여한 상태이다.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에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金融機關이 기업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다. 즉 소유규제의 實效가 의문시되고 있다. 오히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費用만 수반되고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간에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 신규 소유규제의 도입 이전에 진출한 기득권자인 기업과 공식적으로 소유가 허용된 기업은 우위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금융기관간에 업무영역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이 변화할 것이므로 産業資本에 의한 金融機關의 소유규제간에 통일과 조화가 필요하다. 업무영역이 통합되면서 金融機關의 다각화, 대형화, 전문화 등이 진전되고 새로운 金融機關이 탄생할 것이므로 소유규제의 비합리적인 차별은 金融의 發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금융기관 소유지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경제력 집

중의 악화를 의미하여 問題點이다. 예컨대 30大 기업집단의 금융기관 소유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丁炳然·梁英植(1992) 등 참조).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金融機關 所有는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에 대한 기업의 影響力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Ⅲ. 政策方向

1. 産業資本의 金融機關 所有에 따른 副作用

産業資本에 의한 金融機關의 지배는 그 자체로서 順機能을 초래할 수 있지만 많은 副作用도 초래한다. 먼저 順機能부터 살펴본다.

産業資本이 金融機關을 소유하여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무엇보다도 金融機關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될 수는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부 보호막하에서의 지도에 따른 慣行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 채 자율과 창의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신속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경영의식을 지닌 기업이 企業性에 입각하여 金融機關을 경영하는 길이 신속히 金融機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므로 産業資本에 의한 금융기관 지배를 허용하여 金融機關 특히 은행에게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주장되어 왔다.

또한 産業資本에 의하여 금융의 대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부

본의 연구에서 規模의 경제가 기대되는 대형화가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金融機關의 규모가 소규모인 점이 금융기관과 실물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産業資本에 의한 金融機關의 지배를 허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본 조달력이 높은 실물기업에 의한 金融機關의 대형화가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金融機關이 실물산업과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마케팅, 상품개발, 정보수집 등의 면에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産業資本에 의한 金融機關의 지배는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수개의 대형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데 기업집단이 금융산업마저 지배하게 되면 경제력 집중문제는 더욱 惡化될 것이며 경제 형평의 달성과 무분별한 비관련 업종진출 억제에 의한 경제 체질의 強化는 더욱 어려운 課題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대체로 계열회사간에 독립경영체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소유주 또는 친인척에 의한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어 소속된 금융기관은 기업집단을 위한 私金庫의 역할을 벗어나기 힘들다. 현재는 기업집단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金融機關의 私金庫化를 억제하기 위하여 金融機關의 자산운용이 규제되고 있으나 점차 규제가 완화 내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의 私金庫化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金融機關은 경제의 기본적인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金融制度를 형성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 등 자금의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金融機關이 부실하게 되어 도산하게 되면 이는 해당 금융기관만의 도산으로 끝나지 않고 금융제도 전체가 不安全하게 되어 모든 경제가 파탄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중앙은행은 금융제도의 안전을 위하여 예금자 보호, 金融機關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 및 재할인 제도 등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만약에 金融機關이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안전을 위한 장치는 결국 기업집단을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 金融機關의 도산 방지는 곧 그 金融機關을 소유하는 기업집단의 도산 방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 즉 국민이 負債 속에 있는 기업집단을 보호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또는 金融機關의 안전장치가 기업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정부가 기업경영에 간섭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金融機關은 거래상대인 거래자의 利益을 보호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金融機關은 관련회사에 대한 형식적인 대출 심사, 부실 관련회사에 대한 무리한 자금공급, 경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불공정한 내부거래, 수집한 정보의 부당한 이용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소속 金融機關의 도산에 의한 금융제도의 불안전이 초래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자의 利益이 부당하게 훼손되는 심각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된다.

産業資本이 金融機關을 소유하게 되면 예상되는 이와 같은 副作用으로 인하여 産業資本의 금융기관 소유는 오히려 금융 자율화의 걸림돌이 된다. 産業資本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의 副作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副作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금융 규제의 緩和 내지 廢止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많은 규제 특히 자산운용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産業資本이 金融機關의 지분에 깊숙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視覺에서 볼 때 소유규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하게 되면 금융 자율화의 걸림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 外國의 事例

가. 美國 : 金融산업과 實物산업의 분리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 소유가 分散됨으로써 金融機關이 기업을 지배하거나 기업이 金融機關을 지배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며 기업이 金融機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문 경영인이 金融機關을 경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産業資本에 의한 金融機關의 소유 및 지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독점 금지법,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제도 등의 규제가 있다.

특히 기업의 은행지배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엄격하다. 예컨대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는 없으며 단순 투자의 조건 아래 産業資本의 은행지분 참여는 25%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그 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해당 감독당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등이 은행업무와 관련된 특정 金融機關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소유하여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는 監督當局에 지주회사로서 등록이 필요하다.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의결권 주식의 5% 미만을 소유할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법에 의거 은행지주회사의 지배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5~25%의 의결권 주식소유의 경우에는 심사대상(gray area)으로 분류되어 감독당국인 중앙은행이 지배여부를 판정한다. 10% 이상의 은행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1987년 ‘競爭均衡銀行法(The Competitive Equality Banking Act)’의 제정 이후 은행지주회사에게 ‘비은행 은행(non-bank bank)’의 지배도 허용

되고 있지 않다. 비은행 은행은 은행업무의 일부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다만 경쟁균형은행법이 制定되기 이전에 형성된 40개 이상의 비은행 은행은 지주회사 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한편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50% 이상의 지분이 여러 機關投資家에 의하여 분산된 상태로 보유되어 있으며 機關投資家는 은행 경영권보다는 투자의 채산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은행 경영권은 대체로 이사회 또는 은행 지주회사의 理事會에서 창출되지만 최고 경영자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외부이사의 비율이 전체 이사의 70~80%에 이르고 있어 은행의 안정된 경영권이 유지되고 있다 (<表 5> 참조).

<表 5> 미국 金融집단의 機關投資家 및 大株主 比重(1993年 3月 現在)

(단위: 개, %)

	기관투자자 총수		5%이상 소유자수	
		比重		比重
Citi corp.	296	54.60	4	33.32
Chemical Banking Corp.	380	69.10	2	10.28
BankAmerica Corp.	424	56.00	1	6.50
J. P. Morgan & Co. Inc.	566	62.25	1	7.58
Chase Manhattan Corp.	257	57.59	2	11.12
Bankers Trust New York Corp.	296	70.37	3	21.25
Nations Bank Corp.	389	56.02	0	0.00
Bank of New York Co. Inc.	260	77.76	4	21.40

資料: 安鍾吉(1995).

이와 같이 産業資本(보험회사 자본 포함)에 의한 은행의 지배는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所有에 대한 규제는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 및 보험회사에 의하여 증권회사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 지배는 활발하다. 예컨대 順資産 基準으로 10大 증권회사 중에 4개가 기업 및 비은행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그리고 20大 금융회사(Finance Company) 중에 7개가 GM(General Motors) 및 GE(General Electric) 등의 産業資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나. 獨逸 : 금융산업의 실물산업 지배

독일의 경우에는 産業資本의 축적이 미흡한 상태에서 산업화가 추진되고 증권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기업은 자금조달을 銀行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독일의 은행은 상업은행 업무 외에 증권 업무, 투자 업무, 자산운영 업무 그리고 일부 보험업무까지도 취급할 수 있는 金融機關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겸업은행(universal bank)으로서 기업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보유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기업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함에 따라 은행의 기업지배가 問題가 되었으며 기업의 은행지배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 규정상으로는 일반적인 독점금지법 이외에 은행의 기업주식 소유 또는 기업의 은행주식 소유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제는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기업의 은행 소유 및 지배가 억제되고 있다. 즉 은행 주식 또는 의결권의 10% 이상을 취득한 자는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에 즉시 신고하고 취득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당국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득 주식을 처분하게 하거나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銀行法에 明示되어 있다. 그 밖에 기업이 은행을 매수

하는 경우 주주 기업에게도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미국과 같이 금융과 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 金融監督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주식이 국내의 주주들에게 광범위하게 分散되어 있다. 또한 은행 주주들의 대부분이 거래은행에 주식을 보관하고(bearer shares system) 은행은 별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법상 은행 지분율이 25%를 초과할 때만 주주명부가 공시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經營權은 대체로 이사회에 있어 안정적인 경영권이 유지된다.

다. 日本 : 금융과 산업간 상호소유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집단내의 은행, 생명보험회사 등 金融機關과 대기업들이 서로 獨立性을 유지하면서 주식의 안정적인 상호보유, 임원의 겸임 및 파견, 유기적인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상호지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주주는 생명보험회사와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이며 계열회사의 대주주는 생명보험회사이다. 생명보험회사는 경영권보다는 단순한 기관투자자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전문 경영인이 실질적으로 은행을 지배하게 된다. 이때 전문 경영인에 대한 감시는 상호소유 및 상호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견제와 신뢰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상법상 자회사는 자기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고 상호출자 관계에 있는 두 회사는 25% 범위내에서 주식의 相互保有에 의한 의결권이 허용된다. 그리고 독점금지법에 의하여 자본금 100억엔 이상 또는 순자산액 300억엔 이상인 주식회사는 자기자본과 총자산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여 국내 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은행주식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가 法的으로 規制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과 유사하게 은행, 생명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를 중심으로 기업의 대주주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금지법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국내회사의 株式을 5%(보험회사의 경우 10%)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체로 세계대전 이후 외부로부터 일본 금융기관 및 기업의 經營權 安定을 위해 은행과 기업이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과정에서 은행 주식이 5%의 지분을 이내로 分散되어 있다. 그리고 6大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은행의 경우 동일 기업집단 소속의 생명보험회사가 5% 内外의 지분을 소유하여 최대주주이며 다른 기업집단 소속의 2~3개의 생명보험회사들이 3~4%의 지분을 소유하고 다수의 계열기업들이 1% 内外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은 經營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경영자들간에 각종 모임을 통하여 기업집단의 경영방침을 확인하고 관련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데 그친다. 이와 같은 은행의 상호소유 관계는 경제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상호 지분율이 유지되고 있어 은행의 經營權 安定이 이루어지게 된다(<表 6> ~ <表 7> 참조).

證券會社의 경우에도 독점금지법 외에 지분제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는 없으며 증권회사의 지분은 대체로 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 소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의 안정된 經營權이 유지되고 있다(<表 8> 참조).

3. 所有規制의 緩和와 金融監督의 強化

가. 금융기관 소유규제의 완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강력한 規制를 받아 왔다. 그러나 특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이 개방되어 감에 따라 그 規制가 이제는 오히려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要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점의 시각에서 각종 금융규제를 폐지하거나 혁신적으로 緩和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규제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일부는 지나치게 혁신적인 조치로 인한 副作用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의 효과가 실제 경제활동에서는 신속히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表 6> 주요 일본기업집단의 주거래은행 所有現況(1991년 현재)

(단위: %)

순위	사쿠라은행 (미쓰이 기업집단)	미쓰비시은행 (미쓰비시 기업집단)	스미토모은행 (스미토모 기업집단)
1	일본생명보험(3.5)	메이지생명보험(5.8)	스미토모생명보험(6.0)
2	미쓰이생명보험(3.5)	동경해상화재(4.3)	일본생명보험(4.4)
3	太陽생명보험(3.5)	제일생명보험(3.5)	마쓰시다전기산업(2.7)
4	제일생명보험(2.9)	일본생명보험(3.1)	스미토모신탁은행(2.4)
5	도요타자동차(2.5)	미쓰비시중공업(3.0)	산요전기(2.0)
6	도시바(1.4)	미쓰비시신탁은행(1.8)	제일생명보험(1.9)
7	미쓰이신탁은행(1.2)	太陽생명보험(1.7)	스미토모상사(1.8)
8	미쓰이해상화재(1.0)	미쓰비시상사(1.7)	麗島건설(1.7)
9	미쓰이생명보험(1.0)	신일본제철(1.6)	스미토모해상화재(1.7)
10	미쓰이부동산(0.9)	아사히가라스(1.4)	신일본제철(1.7)

註: 편의상 한자를 한글식 음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음.

資料: 東洋經濟新聞社, 『會社 四季報-1993년 新春-』, 1993.

孔柄溟(1994)에서 재인용.

<表 7> 일본 6大 집단의 株式占有 上位 10社(1991年 현재 平均持分率)

(단위: %)

순위	미쓰이 기업집단	미쓰비시 기업집단	스미토모 기업집단
1	미쓰이생명(3.42)	메이지생명(5.00)	스미토모생명(6.01)
2	사쿠라은행(3.42)	미쓰비시신탁은행(4.45)	스미토모신탁은행(4.78)
3	미쓰이신탁은행(2.70)	미쓰비시은행(3.78)	스미토모은행(3.55)
4	미쓰이해상화재(1.68)	동경해상화재(2.80)	스미토모상사(1.86)
5	미쓰이물산(0.87)	미쓰비시중공업(2.43)	스미토모해상화재(1.39)
6	미쓰이부동산(0.60)	미쓰비시상사(1.87)	스미토모금속공업(1.26)
7	도시바(0.58)	아사히가라스(0.95)	일본전기(1.26)
8	도요타자동차(0.56)	미쓰비시지소(0.79)	스미토모화학공업(0.91)
9	도레이(0.46)	미쓰비시그룹(0.73)	스미토모전기공업(0.82)
10	미쓰이조선(0.39)	미쓰비시화성(0.66)	스미토모금속광업(0.70)
	미쓰비시전기(0.66)		
순위	후요우 집단	상와 집단	다이이찌강쿄 집단
1	후지은행(3.70)	일본생명(3.86)	다이이찌강쿄은행(3.57)
2	야스다생명(2.78)	상와은행(3.51)	아사히생명(3.29)
3	야스다신탁은행(2.77)	동양신탁은행(2.46)	후지통운(0.88)
4	야스다해상화재(1.69)	히타치제작소(2.30)	이토추상사(0.40)
5	마루베니(0.66)	대동생명(0.76)	고하전기공업(0.40)
6	닛산자동차(0.63)	세키스이화학(0.56)	가와사키제철(0.36)
7	대성건설(0.42)	일상정압(0.34)	고하전기금속(0.27)
8	NKK(0.37)	대림조(0.29)	가와사키중공업(0.25)
9	구보타(0.24)	일본통운(0.19)	후지통운(0.24)
10	일본세멘트(0.30)	다이한공업(0.18)	세키스이건설(0.20)

註: 편의상 한자를 한글식 음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음.

資料: 東洋經濟新聞社, 『會社 四季報-1993年 新春-』, 1993.

孔柄溟(1994)에서 재인용.

金融規制는 크게 경쟁제한적 규제와 건전성 규제로 구분될 수 있다. 경쟁제한적 규제는 인사·내부경영규제, 가격규제, 자금 운용·조달 규제, 신규진입 규제 등으로서 현재 이들 규제가 완화·폐지의 주 대상이 되고 있으며 金融機關의 소유규제도 일종의 경쟁제한적 규제이다.

金融機關의 인사나 점포 설치·이전 등 내부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철저히 배제되는 慣行이 정착중에 있으며 금리, 수수료 등의 가격이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전히 자유화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국공채 판매업무가 은행,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등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구분이 완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대출의무 비율 등 자금운용에 대한 각종 지도·의무 비율이 완화·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는 OECD가입 등 금융 개방화의 과정에서 金融機關의 신설·탈퇴에 관한 규제도 더욱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表 8> 일본 4大 증권회사의 소유현황(1995년 3월 현재)

(單位: %)

순위	大和證券	山一證券	日興증권	野村證券
1	住友신탁은행(4.31)	富士은행(3.62)	三菱은행(3.11)	사쿠라은행(3.34)
2	住友은행(4.03)	三菱은행(3.62)	日本興業은행(2.93)	東洋신탁은행(2.50)
3	日本興業은행(3.40)	日本興業은행(3.62)	富士은행(2.93)	三和은행(2.35)
4	일본장기신용은(3.40)	第一勸業은행(2.67)	東海은행(2.81)	大和은행(2.34)
5	農林中金(3.06)	일본생명보험(2.62)	三井신탁은행(2.81)	일본생명보험(2.34)
6	太陽생명보험(3.06)	三菱신탁은행(2.59)	三菱신탁은행(2.81)	日本興業은행(2.21)
7	일본생명보험(2.91)	安田생명보험(2.56)	明治생명보험(2.70)	일본장기신용은(2.21)
8	安田신탁은행(2.43)	第一생명보험(2.53)	아사히은행(2.50)	第一勸業은행(1.58)
9	富士은행(1.85)	安田신탁은행(2.52)	일본생명보험(1.95)	三井신탁은행(1.55)
10	千代田생명보험(1.80)	富國생명보험(2.46)	일본장기신용은(1.82)	住友신탁은행(1.29)

註: 편의상 한자를 한글식 음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음.

특히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각종 외국 금융기관에게 국내시장에 支店, 合作法人 및 現地法人 형태로의 진출이 허용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의 開放을 억제해 온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 금융기관의 국경초월의 거래가 허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폐지는 곧 金融機關의 자율적인 責任經營을 전제로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자율과 창의에 의한 금융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부실경영에 대해서 金融機關 스스로 책임지고 도태되는 풍토를 예상한다. 금융산업에도 '적자생존'의 경쟁원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일개 金融機關의 도산으로 인하여 연쇄적인 預金引出現象이 발생할 때는 다른 건전한 金融機關도 도산하게 되고 이로부터 金融制度가 전체적으로 不安全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폐지함과 동시에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는 強化되어야 한다. 금융산업에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지배하게 되면 금융제도의 안전을 市場規律에만 맡길 수는 없다.

건전성 규제는 건전한 금융기관 경영을 유도하는 규제, 선의의 일반 금융거래자를 보호하는 규제 등이다. 前者는 金融機關의 유동성, 노출 위험 등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여 資本의 充實度를 규제하고 건전경영의 차원에서 진입·퇴출을 규제하는 것 등이다. 後者의 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규제, 정보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정보의 公示를 확대하는 규제, 선의의 소액예금자를 보호하는 규제 등이다.

건전성 규제가 확립될 때 규제완화의 副作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는

해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전성 규제의 強化가 경쟁제한적 규제의 緩和를 압도해서는 안된다. 건전성 규제는 시장규율에 의한 자율적인 금융제도 안전 유지의 기능을 보완하는 데 그쳐야 한다.

나. 금융감독의 강화

금융기관 소유규제에 관한 올바른 政策方向은 경쟁제한적인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건전성 규제는 金融監督이 강화될 때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다. 즉 규제의 완화와 監督의 강화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앞에서 産業資本이 金融機關을 지배할 때 예상되는 副作用을 지적하였다. 금융기관의 소유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유규제 완화의 副作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은 監督에 있다. 감독당국은 건전성 규제에 의하여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① 金融機關의 부실화 및 金融制度의 불안전성을 방지하고 ② 금융거래자의 利益을 보호하는 役割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감독당국은 ③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④ 금융기관의 私金庫化 및 불공정한 내부거래 등을 방지하는 役割을 담당할 수 있다. 이 때 金融機關의 소유규제 완화가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유규제 완화의 問題點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도 감독당국의 監督機能에 의하여 해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金融監督이 現時代의 요구에 부응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독의 기준이 되는 규제의 內容이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명료하지 못하여 투명성이 결여된 규제는 감독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하고 慣行에

의한 금융거래가 지속되어 규제완화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要因이다. 그리고 金融監督은 봉사하는 정신으로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건전경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金融機關을 지원하는 것이 金融監督이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 스스로의 건전성을 위하여 관련회사에의 부실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内部統制機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독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감독당국은 金融機關의 소유규제 완화 이후에 대비하여 필요한 規制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유규제 완화의 副作用을 최소화할 수 있는 自己資本 規制 등의 건전성 규제를 구체적으로 투명화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그 규제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체제와 인력 등의 준비가 요구된다. 예컨대 감독당국은 金融機關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test)의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부적격시에는 소유권을 부인할 수 있는 權限을 지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및 세법의 정비가 필요한 한편 감독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도모한다. 감독당국은 金融機關의 公示義務를 강화하여 시장규율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예금보험공사 등 예금자보호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기업과 금융기관간에 발생할 수 있는 利害相衝의 경우를 조사하여 이를 防止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마련하여 감시한다.

4. 金融機關 所有規制의 調整

가. 은행

은행의 소유규제 조정의 方向은 은행이 부실 대출을 하거나 기업의 私金庫

化되는 것을 방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이 유지되도록 하고 은행의 대형화와 더불어 企業性이 제고되어 은행의 경쟁력이 強化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소유의 分散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經營權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정 방향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서로 상충되는 목적이 최대한 調和를 이루는 방향으로 소유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課題이다.

따라서 지급결제기능, 신용창조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의 特性과 부실 대출,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 등의 問題를 여전히 안고 있는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問題點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30大 기업집단의 시중은행 지배를 억제하고 있는 現行의 소유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現實的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30大 기업집단의 평균 負債比率(부채총계/자기자본)이 354.83%(1994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집단에게 은행의 지배를 맡기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문제가 緩和되고 소주주의 권한 강화, 경영의 공시 및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所有分散에 의하여 안정적인 은행의 經營權이 형성되며 금융전업기업이 육성되는 등의 與件에 따라 30大 기업집단의 소유를 억제하는 현 은행의 소유규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産業資本에 의한 지배가 허용되고 있지만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증자를 원활하게 하며 기득권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지방은행도 시중은행화함에 따라 지방은행과 시중은행간 구분의 論理的 妥當性이 퇴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産業資本의 지방은행 소유로 인한 副作用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監督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소유가 분산된 지방은행과 특정 産業資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지방은행간에 실질적으로 明示的인 규정을 준비하여 監督에 差異를 두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한도제, 상호지급보증제한과 세법상의 상속·증여세 강화 또는 세정 강화 등으로는 은행으로서의 특성상 지방은행의 건전성 등을 보장하기는 힘들다. 즉 동일인 여신한도제, 거액여신 총액한도제, 여신한도관리제, 공시제도 등에 있어서 差異를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産業資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은행에게는 현재의 자산운용 규제를 補強하여 적용시키는 반면 다른 은행에게는 현 자산운용 규제를 緩和하여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감독에 의하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의 소유규제에 있어서의 不平等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附表 1> 참조).

또한 産業資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지방은행에게는 타 은행에 비하여 다른 金融機關에의 出資 規制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産業資本으로부터 독립된 은행에게는 金融機關에의 出資 規制를 상대적으로 더욱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合作銀行의 경우 소유지분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도 産業資本에 의한 소유를 예외적으로 높게 허용하되 감독에 있어서 다른 은행과 차이를 둠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합작은행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분참여를 높게 허용하더라도 외국 금융기관의 지분 때문에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권 지배에는 限界가 있을 것이며 감독 등에 의하여 안정적인 經營權만 유지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企業性이 가미될 수 있고 大型化가 용이하며 産業資本의 은행소유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事例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대주주를 견제하는 역할도 예상되며 타 은행에의 자극제도 될 수 있다. 다만 金融機關의 건전성을 위해 감독의 차

별화는 필요하다. 그 밖에 시중은행에 대한 所有分散을 꾀하는 소유규제가 철저하게 시행되어 명실상부한 소유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정책당국의 課題이다.

나. 비은행 금융기관

비은행 금융기관과 은행간의 차이, 金融開放 및 金融發展, 기존의 産業資本에 의한 비은행 금융기관 소유현황 등의 與件을 고려할 때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유규제 조정도 은행의 경우와 같이 규제의 완화, 규제의 투명화, 규제의 형평성 확보, 규제의 단순화 등의 方向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産業資本의 소유규제는 緩和한다. 즉 모든 기업이 비은행의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정도의 경제력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기업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과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외에 金融監督에 있어서도 차별화한다. 이는 金融機關으로서의 특성상 비은행 금융기관에게는 건전성 유지, 거래자의 이익 보호, 私金庫化 방지 등의 役割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유규제가 그 副作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을 때 경쟁제한적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 규제완화의 방향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소유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金融機關을 金融監督에 있어서 차별화할 수 있도록 規制가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주주 및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 및 투자 한도 등의 동일인 여신 및 투자 한도, 경영의 공시제도 등

에 있어서 明示的으로 差異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産業資本으로부터 독립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緩和하고 自己資本 중심으로 規制하는 것 등이다.

또한 産業資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金融機關과 産業資本으로부터 독립된 金融機關을 다른 금융기관에의 출자 규제에 있어서 차별을 둔다. 예컨대 産業資本으로부터 독립된 金融機關에게는 타 금융기관에의 출자규제를 상대적으로 더욱 완화하는 것이다. 金融機關의 다각화 및 대형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 금융기관에의 지분참여가 활발해야 할 것이므로 출자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企業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金融機關에 의한 出資는 곧 企業의 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출자규제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별화가 필요한 것이다. 투자신탁회사의 신규설립 및 전환시 10大 系列企業群에 소속된 證券會社의 단독출자(50% 이상)가 허용되지 않은 것은 차별화의 예이며 이는 올바른 政策方向이다.

우리나라 10大 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집단은 世界的인 企業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94년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世界企業中에서 삼성전자가 367위, 현대자동차는 427위에 그치고 있다(*Fortune* August, 1995 참조). 또한 10大 이내의 기업집단과 11大 이후의 기업집단과는 그 規模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表 9> ~ <表 10> 참조). 이에 따라 금융의 개방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10大 内外의 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집단에게 비은행 금융기관의 所有에 의한 지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소유규제를 조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매출액, 부가가치 등의 주요 지표에서 30大 기업집단의 총액 중 11~30大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比重이 대체로 25% 이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쟁제한적 규제는 완화·폐지

하되 현행의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한 規制는 補強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 유지한다. 그리고 이미 10大 内外의 기업집단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는 감독에 있어서 차별화한다. 즉 10大 内外의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에게는 기본적으로 건전성을 위하여 그 동안의 경제력 집중억제, 私金庫化 방지, 불공정한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한 規制가 계속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강화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규제는 明示的이지 못하며 금융산업간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규제가 透明化되어 있지 않아 정책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경쟁제한적 규제는 완화·폐지하고 건전성 규제는 보강·유지하면서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유규제를 조정하는 것은 금융규제를 완화하면서 현 규제의 問題點을 해소할 수 있는 方案이 될 것이다.

<表 9> 30大 기업집단의 규모 및 구성비 비교(1994년말 현재)

(단위: 조원, %)

	규 모			구 성 비		
	1~5대	6~10대	11~30대	1~5대	6~10대	11~30대
매출액	149.4	35.0	41.0	66.3	15.5	18.2
부가가치	26.8	8.6	10.8	58.1	18.6	23.3
총자산	124.4	42.8	53.8	56.3	19.3	24.4
부채총계	94.0	33.9	44.5	54.5	19.7	25.8
자본금	11.5	4.2	4.9	56.0	20.3	23.7
자기자본	30.5	8.9	9.3	62.7	18.2	19.1
자본잉여금	12.3	3.1	4.7	61.1	15.5	23.4
이익잉여금	6.5	1.4	-0.4	86.5	18.5	-5.0
영업이익	10.4	1.9	2.6	69.7	12.5	17.8
경상이익	4.0	0.5	-0.0	90.2	10.4	-0.7
당기순이익	2.8	0.3	-0.0	91.5	9.1	-0.6
연구개발비	2.3	0.3	0.3	81.2	9.5	9.3
설비투자비	11.3	3.8	3.8	59.9	20.0	20.2
인건비	11.0	3.8	4.5	57.0	19.8	23.3

資料: 최승노(1995).

<表 10> 1996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현황

(단위: 개, 10억원)

기업집단명	계열회사수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1. 현대	46	43,743	3,303	59,068
2. 삼성	55	40,761	3,243	63,781
3. LG	48	31,395	3,064	41,618
4. 대우	25	31,313	3,987	29,413
5. 선경	32	14,501	1,057	17,402
6. 쌍용	23	13,929	1,283	15,524
7. 한진	24	12,246	834	8,959
8. 기아	16	11,427	912	9,377
9. 한화	31	9,158	941	8,274
10. 롯데	28	7,090	1,408	6,416
11. 금호	27	6,423	862	3,946
12. 두산	26	5,756	296	4,073
13. 대림	18	5,364	400	4,127
14. 한보	21	5,147	477	3,001
15. 동아건설	16	5,117	401	4,671
16. 한라	17	4,766	239	4,156
17. 효성	16	3,574	243	4,955
18. 동국제강	16	3,433	312	3,406
19. 진로	14	3,303	242	1,239
20. 코오롱	19	3,129	306	3,778
21. 동양	22	2,995	448	2,804
22. 한솔	19	2,990	301	2,006
23. 동부	24	2,935	325	4,141
24. 고합	11	2,924	299	2,315
25. 해태	14	2,873	217	2,592
26. 삼미	8	2,475	388	1,720
27. 한일	8	2,180	306	1,197
28. 극동건설	11	2,158	428	977
29. 뉴코아	18	1,966	144	1,297
30. 벽산	16	1,853	154	1,253
합 계	669	286,924	26,820	317,486

資料: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와 같이 金融과 産業間의 소유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基準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규제의 實益이 클 것이다. 소유 지분율을 基準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장분산, 담합 등이 가능하므로 금융의 자율화가 진전됨에 따라 規制의 效果가 의심된다. 또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實質적으로 규제 완화의 의미가 있다. 예컨대 10大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大 기업집단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10大 기업집단에 의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所有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0大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에는 金融機關과 계열회사 간에 엄격한 차단벽(fire wall)이 형성되어 金融機關의 독립적인 經營을 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될 뿐이다. 또한 기업집단과 관련된 문제가 改善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10大 기업집단의 基準이 완화되어 결국에는 폐지될 것이다. 즉 기업집단을 소유규제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유규제의 段階的 緩和方案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에 금융기관별로 원칙적인 소유규제 조정의 방안을 살펴보면, 증권회사의 경우 이미 産業資本에 의한 소유비율이 매우 높아 私金庫化, 불공정한 내부거래 등이 우려되고 이러한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증권회사가 계열기업의 株價管理, 대주주의 지분관리 등을 수행한 事例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10大 기업집단 중 2개 기업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권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0大 内外의 기업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증권회사는 기타 증권회사와 규제, 감독 등의 면에서 차별화하는 것이 産業資本에 의한 증권회사 소유의 副作用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예컨대 정책당국은 현행 불건전 경영, 私金庫化, 불공정 내부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증권회사의 資産運用 規制를 대폭 緩和하되 10大 内外 기업집단의 증권회사에는 계속 補強하여 적용시키며 또한 10大 内外 기업집단 증권회사의 완전 독립 경영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등이다(<附表 2> 참조).

生命保險會社の 경우 그 업무가 점차 다른 金融機關과 동질화되어가므로 원칙적으로 소유규제에 있어서 차별화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10大 内外의 기업집단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의 기업집단에 의한 생명보험회사의 所有는 허용되어도 무난할 것이다. 특히 현재 신설회사 중심으로 많은 보험회사의 자본 상태가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보험회사는 큰 폭의 資本金 增大가 필요할 것이므로 현재보다 보험회사에 대한 産業資本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10大 内外의 기업집단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기업집단과 차단벽을 쌓는 등 완전한 獨立經營體制를 갖춘 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세계적인 金融機關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附表 3> 참조).

損害保險會社の 경우에도 정책당국은 10大 内外 기업집단의 所有는 제한하며 그 밖의 기업집단에 의한 所有는 허용한다. 그리고 기존의 10大 内外 기업집단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는 건전성을 위하여 계열회사의 私金庫化 및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초래하지 않도록 規制를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附表 3> 참조).

한편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시설대여회사, 할부금융회사 등 금융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타 金融機關에 대해서도 統一된 소유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앞으로 각종 금융기관의 業務領域이 확대되

는 방향으로 規制가 완화되어 원칙적으로 規制에 의한 금융기관간 구분은 소멸되어 갈 것이다. 또한 규제가 투명화되고 금지업종 열거주의(negative list system)의 형태를 취함에 따라 新種 金融機關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역금융, 도매금융, 소매금융, 외환금융 등의 전문적인 特定 金融業을 취급하는 다양한 소형 금융기관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예상할 때 현 시점에서 모든 다양한 형태의 金融機關에 대한 所有를 10大 内外 기업집단 이외의 기업에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 경우에도 만약 실질적으로 10大 内外 기업집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는 다른 金融機關과 마찬가지로 金融機關의 건전성을 위하여 金融監督에 있어서 差別化한다. 이와 같이 소유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金融機關이 탄생하고 퇴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비은행에 대한 監督業務는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위하여 보다 중요한 役割이 요구될 것이다(<附表 4> ~ <附表 5> 참조).

IV. 結

해답없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金融과 産業間의 所有問題 특히 金融機關에게 주인을 찾아 주는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課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답은 아니더라도 찬반 양론간에 合意點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지금 금융관련 국제협상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금융기관간에 ‘공정한 경쟁여건(a 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의 課題이며 이에 따라 국가간에 서로 다른 金融規制가 통일·조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간에 경쟁여건이 완전히 同一하게 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自明하다. 따라서 국내 金融機關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가 필요하며 소유규제도 例外는 아니다.

本稿는 기본적으로 産業資本에 의한 金融機關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方案을 제안하였다. 즉 지급결제기능을 지닌 은행으로서의 特性을 중시하여 공정거래법상 30大 기업집단에 의한 시중은행의 소유·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10大 内外의 기업집단을 제외한 産業資本에게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유·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이다.

또한 일정한 條件 아래서는 10大 内外의 기업집단도 비은행을 소유·지배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기업에 의해 소유·지배되는 지방은행과 함께 10大 内外의 기업집단에 의해 소유·지배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및 금융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金融監督 등에 있어서 差異를 두는 방안이다. 예컨대 건전성 규제 및 감독, 출자 제한 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10大 内外의 기업집단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소유·지배할 수 있는 條件을 明示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소유규제를 조정함에 따라 기업의 지배로 인한 副作用이 차단되면서 金融機關의 다각화·대형화가 이루어져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는 與件에 따라 産業資本에 의한 金融機關의 소유규제는 더욱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향에서 政策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 姜柄皓, 『金融制度論』, 博英社, 1994.
- 孔柄溟, 『일본의 소유구조와 한국의 기업집단』, 한국경제연구원, 1994. 5.
- 金融産業發展審議會 金融制度改編研究小委, 『金融制度改編研究』, 1993. 12.
- 金爽中외 3人, 『리스金融』, 韓國리스金融協會, 1995. 12.
- 소일섭, 『경제력집중억제시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6.
- 安鍾吉, 『金融環境 變화와 銀行·企業間 關係의 發展方向』, 研究報告書 95-02, 韓國租稅研究院, 1995. 5.
- 張鉉俊, 『새로운 經濟秩序와 生産性 向上』, 韓國租稅研究院, 1994. 10.
- 丁炳炁·梁英植, 『韓國 財閥部門의 經濟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92.
- 財政經濟院 金融政策室, 『金融政策年報』, 1995.
- 全國經濟人聯合會 調查部, 『與信管理制度的 改編方案』, 全經聯 調查 92-11, 1992. 11.
- 최승노, 『1995년 30대 기업집단』, 한국경제연구원, 1995. 12.
- 崔長鳳, 『開放經濟下에서의 金融政策 - 90년대 後半期の 效率性 增進을 위한 제도적 課題 - 』, 1995.
- 韓國銀行,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2.
- Benston, G. J., *The Separation of Commercial and Investment Banking*, London: Macmillan Press, 1990.
- Dimsdale, N. and M. Prevezer, *Capital Markets and Corporate Governance*, Oxford: Clarendon Press, 1994.

- Monks, R. A. G. and N. Minow,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Blackwell, 1995.
- OECD, *Banks Under Stress*, Paris: OECD, 1992.
- Prowse, S. D., "Corporate Governance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 Survey of Corporate Control Mechanisms Among Large Firms in the U.S., U.K., Japan and Germany,"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 Instruments*, Vol. 4, No. 1, New York University Salomon Center, 1995.
- Prowse, S. D., "Alternative Methods of Corporate Control in Commercial Banks," *FRB of Dallas Economic Review*, 3rd Quarter, 1995, pp. 24 ~36.
- Saunders, A.,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 Homewood, IL: Irwin, 1994.

<附表 1> 銀行의 주요 자산운용 규제

편중여신억제

- 동일인 여신한도 관리 :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은행법 제27조 제1항).
- 금융기관은 전체 금융기관 대출금기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와 거액 여신을 공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여신취급을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1조)*.
 - 매년 1회 전년도 매월말 잔액 평균을 기준으로 30대 계열기업군을 선정하여 여신한도를 관리하여야 한다(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6조).
 - 금융기관은 5대 및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의 점유율이 기준비율을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 기준비율은 금융기관별로 전년도 실적치 등을 감안하여 매년 1회 정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비율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7조 제3항).
 - 이때 주력업체 및 주식분산 우량기업체는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한다(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7조 제5항).
- 거액여신 총액한도 관리 -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동일계열기업군 각각에 대한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거액여신) 그 거액여신의 총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은행법 제30조의2 제3항).
 - 금융기관은 거액여신의 총합계액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3조 제1항).
 - 금융기관은 여신거래업체에 대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현황을 조사·파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8조).
 -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을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한 경우에는 매월말 현재 개인별, 법인별, 계열기업군 및 계정별 여신현황을 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11조 제2항).
- 지방은행의 편중대출 억제*
 - 지방은행은 당해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의한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13조).

<附表 1>의 계속

증권투자의 제한

은행은 주식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자기 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할 수 없으며(은행법 제22조),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하고는 타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인 소유를 할 수 없다(은행법 제27조 제10항).

주거래은행의 기업지도 및 관리*

- 30대 계열기업군은 주기업체의 주거래은행을 계열기업군의 주거래은행으로 한다(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28조 제1항).
- 주거래은행은 30대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별로 전담심사역을 두어 여신검사, 기업정보 및 여신정보의 수집·분석·관리와 이에관한 정보화일의 비치 관리, 승인·신고·협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28조 제2항).
- 주거래은행은 대상기업체가 계열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계열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기업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열회사에 대하여도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을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32조).
- 주거래은행은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대상기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35조 제1항).
- 주거래은행은 기업의 부동산취득승인 신청 내용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골프장 및 스키장용 토지, 목장, 조림용 임야, 오락서비스업용 토지, 휴양업용 토지의 취득인 경우에는 대물변제 등의 경우와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승인하지 못한다(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36조).
- 주거래은행은 부동산취득 승인 심사시 취득의 목적·용도·자구의무 이행상황·소요자금 조달계획, 신규 대형투자사업인 경우는 적정성·사업성·총소요자금의 규모·조달계획·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37조).
- 주거래은행은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로 하여금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국세청장이 통보한 비업무용부동산과 매각조건부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자체처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입의뢰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위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42조).
- 주거래은행은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대상기업체가 업무용부동산과 대물변제, 매각조건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주거래은행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43조).

<附表 1>의 계속

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자금은 은행계정대, 대출, 국·공채, 회사채의 인수 또는 매입, 주식의 인수 또는 매입, 콜론, 자행 신용카드계정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인수,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등의 방법에 의해 운용하여야 한다(신탁업무운용요강 제10조 제1호).
- 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탁업무운용요강 제10조 제2호).
 - ‘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의 수탁금액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여 종합금융회사 또는 단기금융회사가 인수·보증한 어음(무역어음 제외)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 또는 소유하는 행위.
 - 수탁금액의 30% 이상을 발행시장에서 ‘통화조절용채권 등’을 인수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는 ‘금외신탁’을 계약하는 행위.
 - 타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매입 또는 소유하는 행위.
- 주식의 인수 또는 매입의 경우에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자금운용은 신탁종류별로 전월평균 수탁금액의 25%이내로 한다. 다만, 기업금전신탁 및 국민주신탁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신탁업무운용요강 제11조).
- 기업금전신탁의 운용자산의 70% 이상은 통화조절용 채권 등의 인수 또는 양곡관리기금이 발행하는 양곡기금증권의 인수에 운용하여야 한다(신탁업무운용요강 제12조)
- 국민주신탁의 경우 신탁원본의 50%에 해당하는 최초운용은 반드시 신탁설정 당시의 국민주 매입에 운용하여야 한다(신탁업무운용요강 제13조).
- 금전의 신탁자금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서 정하는 여신금지부문에 대하여 대출을 할 수가 없다(신탁업무운용요강 제15조 제1호).
- 신탁자산을 통하여 자사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위탁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고 있다(신탁업무운용요강 제12조의2)*.

註: * 표시는 계열기업에 관련된 사항임.

<附表 2> 證券會社の 주요 자산운용 규제

상품유가증권 등의 소유제한

- 증권회사가 상품유가증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주권의 경우는 장내시장 또는 장외 시장에 등록되었거나 이를 위하여 모집·매출·인수한 것에 한하며 사채권의 경우는 모집 또는 매출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인수한 것에 한한다(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4조).
- 증권회사는 주식, 사채권 등 상품유가증권을 법령에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60%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5조).
- 증권회사는 상품유가증권으로 동일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6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6조).
- 증권회사는 당해 증권회사의 제1대주주인 법인 및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못한다(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7조 제1항)*.
- 증권회사는 당해 증권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고 자기자본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며 계열회사 발행 채권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7조 제2항)*.

출자제한

- 증권회사는 증권관계기관, 증권업에 부수된 업무나 파생된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표준산업 분류상 금융·보험업에 속하는 법인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에만 출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하지 못하고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 시마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9조).

사채보증한도

- 증권회사의 사채보증총한도는 당해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으로 하며, 당해 증권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사채보증은 당해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동일법인에 대한 사채보증은 당해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증권회사는 매분기말 중소기업 발행사채의 보증잔액이 사채보증잔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중소기업 발행사채를 보증하여야 한다(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17조 제3항, 제3항의2)*.

註: * 표시는 계열기업에 관련된 사항임.

<附表 3> 保險會社의 주요 자산운용 규제

- 보험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할 수가 없다(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5조 제2조).
- 보험회사가 행하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은 보험계약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5조 제3조).
- 보험회사는 재산이용에서 총자산에 대해 주식 보유는 30%, 업무용 부동산 소유는 15%, 투자사업용 부동산 소유는 5%,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3%, 동일회사 발행 채권과 주식의 소유는 5%, 동일물건을 담보로하는 대출은 3%,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 및 투자는 5%, 자기계열기업집단에 대한 대출 및 투자는 3%, 중소기업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0.2%나 50억원 중 작은 금액,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자기자본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7조 제1항)*.
 - 자기계열집단이란 보험회사와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험감독원장이 선정한 자이다(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 보험회사가 소유하거나 담보로 하는 동일인의 주식은 그 회사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열기업군에 소속된 보험회사는 동일계열기업군 소속 회사가 아닌 타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7조 제2항)*.
- 동일계열기업군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의 경우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배(상법상 채권발행한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7조 제3항)*.
- 자기계열집단에 속하는 개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7조 제4항)*.
- 보험회사의 자율운용재산 한도는 총자산의 2%로 한다(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7조 제5항).
- 보험회사는 자기계열집단 및 그 친족,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및 비상장유가증권을 매매, 교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할 수 없다(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9조)*.
- 보험회사의 외국환 및 해외부동산 등예의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17조).
- 보험회사는 외국환관리법령에서 취득이 허용된 해외유가증권만을 취득할 수 있다(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18조).

註: * 표시는 계열기업에 관련된 사항임.

<附表 4>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의 주요 자산운용 규제

-
- 투자금융회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단기금융업법 제11조).
 - 투자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단기금융업법 제13조).
-
- 종합금융회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 어음·채무보증 및 채권의 발행,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 지급보증(어음인수 포함)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4조).
 - 30대 대기업군의 경우는 각 기업군 당 자기자본의 1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종합금융회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어음의 할인, 대출을 할 수 없고 지급보증의 경우도 25%를 초과할 수 없다(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5조).
 -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7조).
-
-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지역개발 기타 공공적 사업을 위한 급부·대출 또는 어음할인의 경우는 100분의 15)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의 20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예금의 수입과 기타의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상호신용금고법 제13조).
 - 상호신용금고는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금융기관에의 예금·신용관리기금에의 예탁금 또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상호신용금고법 제15조).
-

<附表 5> 투자신탁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주요 자산운용 규제

-
- 투자신탁회사는 수익자의 보호나 신탁재산의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않된다(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 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상장주식의 신주인수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장유가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위탁회사의 유가증권 등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매각·대출하는 행위
 - 특정한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치면서 다른 신탁재산의 이익을 도모하게 하는 유가증권 등의 거래행위
 - 위탁회사의 계열회사와의 거래행위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등의 과다 취득행위 등 수익자의 보호 또는 신탁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투자신탁회사는 투자신탁의 상환 또는 해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주식시장의 침체, 주식형수익증권의 환매가 대량 발생하여 이를 재매각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증권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8조).
 - 투자신탁회사는 자기자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사채형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 및 공사채형수익증권을 소유하지 못한다(증권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9조).
 - 투자신탁회사는 상장이 예정된 유가증권, 자기가 발행한 비상장유가증권,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투자신탁회사가 타법인에 출자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비상장유가증권을 소유하지 못한다(증권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10조).
 - 직전월말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이 50% 이하인 투자신탁회사는 매입어음, 콜론 및 단기 대여금의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30% 이하로만 운용하여야 하고 차입금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투자신탁회사는 단기 대여금을 자기자본의 15%이하로 운용하여야 한다(증권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13조).
-
- 투자자문회사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주권 등의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투자자문회사의 등록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
-